

30초만 생각하면 청렴한 세상이 됩니다.

청탁금지법



청탁 하기전 잠깐!
금품 받기전 잠깐!
딱! 30초

청탁으로부터 자유로운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가 함께 합니다.

《모두가 꿈꾸는 청렴한 대한민국을 '청탁금지법'이 만들어 갑니다》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



1. 부정청탁 금지

-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 수행 금지
- 부정청탁 시 부정청탁 관련자 제재

2. 금품등 수수 금지

-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 금지
(※ 공직자등의 배우자 포함)
- 금품등 수수 시 관련자 제재
- 기준금액 초과 외부강의 사례금 제한

3. 위반행위 신고 및 보호·보상

-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또는 감독기관), 감사원·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 신변보호 등 신고자 보호장치 마련
-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포상금 지급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6년 9월 28일

생활에 유익한 법무상식

2018년 6월

발간등록번호
78-6460000-000457-06

2018년 6월 (제308호)

생활에 유익한

법무상식



전라남도

법령정보 이용안내

법령정보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law.go.kr>
- 도·시군 및 타시도 자치법규
• <http://www.elis.go.kr>
- 공기업·출연기관 규정관리시스템
• http://211.39.94.161:8088/law_rule

이용가능한 법률정보

- 법제처(www.moleg.go.kr)
최근제·개정법령, 입법예고사항, 판례속보
- 대법원(www.scourt.go.kr)
사건검색, 최근개정법령, 판례속보
- 넷로(www.netlaw.co.kr)
판례를 대법원, 하급심, 헌법재판소로 구분 제공
- 대한민국법률정보(www.lawkorea.com)
입법예고, 법률만화 등
- 전라남도 법무행정서비스(law.jeonnam.go.kr)
법무행정정보, 무료법률상담, 행정심판 등
- 법누리(yeslaw) : 입법예고, 법률뉴스 등
- 법무부, 대검찰청, 헌법재판소, 특허청, 국회도서관, 노동부 등

자치법규 접속방법

- 전라남도 홈페이지를 통한 접속
• 전라남도청 → 정보공개 → 법무행정서비스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클릭
- 전라남도 행정포탈을 통한 접속
• 자치법규 정보시스템(ELIS) 클릭

도정방침

- 생명의 땅,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

- 1. 활기있는 지역경제
- 1. 소득높은 농축어업
- 1. 매력있는 문화관광
- 1. 온정있는 도민복지
- 1. 소통하는 창의도정

독자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법무통계담당관실은

제·개정되는 새 법령과 자치법규를 도민에게 신속히 알리고 법령을 보다 쉽게 이해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매월 법무상식지를 편집 발간·배부하고 있습니다.

「법무상식」지는

독자 여러분의 관점에서 설계하고 통합하여 개개인 필요와 욕구에 맞게 맞춤형 법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개선해야할 사항 및 개인별 법률체험사례 등 법무상식지를 알차게 꾸밀 수 있도록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더욱 유익하고 충실한 「법무상식」지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법무상식

- 편집에 참여한 사람들
 - 법무통계담당관 박화현
 - 법 제 팀 장 채희섭
김양현, 조신웅, 최지선, 채길병, 위영초

○ 보내실 곳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 전라남도 법무통계담당관실
TEL : (061)286-2623 FAX : (061)286-4740 · (행)2623



2018년 6월 통권 제308호

새로운 판례	2
법령해석사례(법제처)	22
행정심판 재결사례	58
생활법률 상담사례	71
법무단신	80
시행법령	101
솔로몬의 재판	107
참고자료	109



-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였다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더라도 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은 당초 고용허가를 받은 날의 경과로써 종료되었다고 판단한 판결

* 울산지방법원 2017구합6765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으로 2015년 9월 9일 대한민국에 비전문취업(E-9)의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5년 12월 16일 주식회사 ○○엔지니어링과의 근로계약이 합의 해지되어 종료되자 2016년 1월 4일 피고에게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하였고, 2016년 2월 4일 주식회사 ○○이엔지(대표자 서○○)와 근로계약기간을 2016년 2월 4일부터 2017년 1월 1일까지로 정하여 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주식회사 ○○이엔지는 피고에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에 관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6년 2월 4일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고용허가를 하였다.

원고는 2017년 1월 1일경 주식회사 ○○이엔지와 이 사건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같은해 6월경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

원고는 2017년 8월 11일 피고에게, '사업장의 고용허가 취소'로 인한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년 9월 18일 원고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신청에 대하여 불허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이엔지가 피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아 원고의 체류자격이 취소된 사실을 2017년 7월 18일경에야 알게 되었고, 그 직후인 2017년 7월 26일경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하여 1개월의 기간을 준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먼저, 이 사건 근로계약의 종료일에 관하여 본다.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이엔지는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하여 피고에게 허가를 받는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근로계약은 외국인고용법 제9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의하여 당초 고용허가를 받은 2017년 1월 1일의 경과로써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7년 8월 11일 피고에게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하였고, 이는 이 사건 근로계약의 종료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사업장 변경 신청을 불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2017년 7월 26일 피고에게 사업자 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담당직원이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계속하여 이 사건 처분을 지연하다가 2017년 9월 18일 이 사건 처분을 함과 동시에 원고가 당일 신청을 한 것처럼 표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사업장 변경신청서)에 날인된 고무인에는 접수일자 “2017. 8. 11.”, 접수번호 “**68”로 기재되어 있고, 다른 고무인에 기재된 날짜인 “2017. 9. 18.”의 측면에는 “불허통지일”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원고의 사업자 변경 신청서는 2017년 8월 11일 접수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 담당직원이 원고의 사업자 변경 신청일을 이 사건 처분일과 동일한 날짜로 표시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체포 당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것을 발견, 직권으로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공무집행방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

* 수원지방법원 2018노371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관련 법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3조의2, 제200조의5).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고지하거나, 그 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 경찰관이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도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체포하려고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2017년 11월 17일 01:10경 ○○경찰서 ○○파출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 가 그 곳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② 당시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파출소에 나갈 것을 요구하였고,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관공서 주취소란 혐의로 체포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였다. ③ 피고인이 그 후에도 욕설을 계속하며 경찰관들의 업무를 방해하자,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 그런데 당시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체포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를 말하는 이외에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별도로 고지하지 않았다. ④ 피고인이 달아나거나 폭력으로 대항하여 사후에 고지하여야 할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고, 현행범 체포 후 수 분이 경과하도록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에 관하여 설명하지 않는 모습이 영상에서 관찰된다. 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현행범 체포 직후 위 파출소 소속 순경 김○○의 오른팔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그로부터 약 1시간 40분 후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 되면서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든 행위에 관한 것이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모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치되기 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는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위법한 공무집행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러한 불법체포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형법 제136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원심판결 중 각 공무집행방해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다. 원심은 공용서류 손상과 각 공무집행방해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이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 양육비변경(감액) 심판청구

* 부산가정법원 2017㉸단200293

1. 주문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로 2018년 4월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80만원을 매월 1일에 지급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청구인은 협의이혼 무렵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양육하는 것을 전제로 부부공동재산이던 아파트를 매도한 차액 8,000만원 상당과 승용차, 적금, 보험 등 대부분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재산분할하여 주었던 점, 이 사건 양육비부담조서상의 내용은 별다른 심사숙고 없이 형식상 기재한 것에 불과한 점, 휴대폰판매점의 매출이 2016년 이후 급격히 감소되어 점포세와 월세도 내지 못할 정도로 어렵고, 2018년 1월경 폐업하기에 이른 점 등을 감안하여 이 사건 양육비부담조서의 내용 중 2017년 6월 1일 이전의 과거 양육비는 면제하고, 그 이후의 양육비는 월 50만원으로 감액해 줄 것을 구한다.

나. 판단

1) 과거 양육비 면제 청구 부분

살피건대,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산분할에 대한 약정은 이를 인정할 소명자료가 없는 점(2018년 2월 19일자 우리은행 금융거래정보회신에 따르면, 사건본인 명의의 적금은 없고, 상대방 명의의 예금도 소액에 불과하며 그 마저 협의이혼 직후인 2009년 12월 31일 청구인에게 100만원을

이체하여 7,872원만 남은 것으로 회신되었다), ② 오히려, 상대방은 위 아파트의 매도차액은 청구인이 상대방 명의로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채무금과 각종 세금 등을 정리하는데 사용되었다고 하는데, 위 아파트의 매도시점(2009년 12월 22일)과 청구인명의 휴대폰판매점 개업일자(2009년 12월 21일) 등에 비추어 보면 상대방의 주장이 더 수긍이 가는 점, ③ 청구인은 2016년 이후 휴대폰판매점의 매출이 급락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2018년 1월경까지 이를 운영하였고, 현재 같은 장소에는 다른 상호의 휴대폰판매점이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는 점, ④ 청구인이 세무서에 신고한 2014년부터 2016년사이의 매출액에 청구인의 동생이 청구인 명의로 운영하였다는 컴퓨터판매점의 매출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의 동생은 처 명의로 컴퓨터판매점을 운영하다 고액의 국세를 체납하자 다시 같은 장소에서 청구인 명의로 동일 사업을 계속해서 운영하면서 억 대의 매출을 내었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위법사항을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청구인이 위와 같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⑤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 청구인의 가게사정이 좋지 못한 달에는 이 사건 양육비부담조서와 달리 최소 1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여도 된다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음에도, 청구인은 매출이 정상적인 해에도 월 100만원의 양육비만 지급하였고 그것도 지체된 경우가 많아 상대방이 두 차례나 양육비 이행 명령을 신청하기에 이른 점, ⑥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2016년 기준 월 235만 원(2016년 매출액 2,824만2,980원 ÷ 12개월)의 소득이 있다는 것인 점, 그 밖에 사건본인의 양육상황, 청구인과 상대방의 직업, 경제적 능력, 생활수준, 재산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양육비부담조서에서 정한 과거 양육비가 과하다거나 특별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장래 양육비 감액 주장 부분

다만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될 당시에 비하여 최근 청구인의 소득이 다소 감액된 사정이 있는 점, 상대방은 이전

부터 청구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한 경우에는 이 사건 양육비부담 조서와 달리 최소 1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에 동의하였던 점, 다만, 사건본인은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교육비 등 더 많은 양육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인이 분담할 장래 양육비의 수액을 일부 감액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아 이 사건 양육비부담조서의 내용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함이 상당하다.



◆ 여행자들인 망인의 유족들이 여행기획업자를 상대로 안전배려의무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안전배려의무위반의 판단기준

* 대구고등법원 2017나712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 회사는 기획여행업자로서 기획여행계약을 맺은 여행자들인 망인들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험배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를 지고, 특히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해변은 밤에 발생하는 큰 파도로 해마다 익사 사고가 발생하는 위험한 지역이므로 망인들 일행에게 밤에 바닷가에 들어가지 말도록 주의를 주어야 했으며, 망인들이 바닷가에 들어가 노는 것을 보았으면 파도에 휩쓸려 사고를 당할 염려가 있으니 해변으로 나오라고 경고하여 바다에서 해변으로 나오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피고 회사의 직원인 L 및 K는 망인들에게 주의나 경고도 하지 아니하였고, 배꼽 정도 수심의 바다에서 놀고 있는 망인들을 보고서도 해변으로 나오게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결국 망인들이 파도에 휩쓸려 사망하게 되었다.

이처럼 망인들은 L 및 K의 위와 같은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L의 사용자인 피고 회사는 망인들의 유족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와 을 제1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기획여행계약의 여행주최자로서 이 사건

여행계약상의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망인들은 성인자(망 H는 1979년생, 망 I는 1960년생)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한 상태가 아니었으며 별다른 신체장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들을 포함한 여행자들이 이 사건 사고 당일 야간에 이 사건 호텔 인근 해변에서 물놀이 하는 것은 이 사건 여행계약의 내용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고, 위 여행계약에 이 사건 당일 오전에 해변에서 해수욕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자유시간 일정이 있었다는 점만으로 이러한 해변에서의 야간 물놀이가 위 여행계약의 급부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일반적으로 야간에 해변에서 물놀이할 경우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

망인들이 사리 분별력이 있는 성인자들임에도 야간에 해변에서 물놀이를 한 것은 스스로 그 위험을 감수하고 하는 행동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회사가 객관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위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행주최자인 피고 회사는 사전에 여행자들인 망인들에게 야간 해변 물놀이의 위험성을 경고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야간 해변 물놀이가 이 사건 여행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망 I는 야간 해변 물놀이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성인자이다. 설령 피고 회사의 국외여행 인솔자 K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 망 I를 찾다가 야간 해변 물놀이 활동을 목격하였다면 그 위험성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행 주최자인 K가 망 I에게 물놀이를 중단하라는 취지로 그 위험성을 경고한 것만으로도 충분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더 나아가 K가 망 I의 안전 여부가 확실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망 I에게 그 위험성을 경고하거나, 망 I를 강제로 끌어내거나, 망인들이 물놀이하지 않도록 감시하는 행위는 K에게 기대할 수 있는 합리적 조치의 범위를 초과한다. K가 위와 같이 합리적 조치를 취한 이상, 피고 회사의 현지 인솔자 L이 망 I가 물놀이하던 해변에까지 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 온실가스 배출 감축실적을 판매한 행위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양도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대법원 2017두65524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1조 제1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재화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로 규정하고 있고, 제1조 제5항의 위임을 받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은 재화에 포함되는 무체물의 하나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들고 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은 이러한 재화의 공급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나아가 부가가치세는 소비재의 사용·소비행위에 담세력을 인정하는 세제이므로 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재산적 가치의 유무는 거래 당사자의 주관적인 평가가 아닌 그 재화의 경제적 효용가치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규정의 내용과 취지 및 부가가치세의 특성 등을 종합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거래인 ‘권리의 공급’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이용될 수 있고 경제적 교환가치를 가지는 등 객관적인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어 재화로서의 요건을 갖춘 권리의 양도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두228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판매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실적은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데, 2009. 8. 21. 지식경제부공고 제2009-327호로 시행된 온실가스배출 감축 실적 정부구매 및 거래기준 제9조에 의하면 정부가 구매한 감축실적의 소유권은 정부에 귀속되고 에너지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원고의 감축실적은

그만큼 삭감된다. 따라서 에너지관리공단이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금을 지급하면서 원고의 감축실적을 삭감하고 그 결과를 취합하여 정부에 보고한 것은 이러한 '감축실적의 귀속'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라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원고가 위 공단에 감축실적을 판매할 의사를 밝히고 금원을 지급받기까지 한 이상, 그에 상응하는 자신의 감축실적 양도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추가로 권리양도의 의사 표시를 할 필요는 없다.

- ☞ 원고가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에 참여하여 정부로부터 위 사업을 위탁 받은 에너지관리공단에 원고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판매하는 형식으로 위 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지급금을 수령한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고기각한 사례



1. 종중 소유 토지에 관한 종중과 종중원 사이의 묵시적 사용대차 관계에서 토지개간으로 인한 유익비상환청구권 인정 여부 (한정 소극),
2. 민법 제203조 제2항 ‘지출한 금액’의 의미(=실제 지출한 금액)와 실제 지출한 금액에 대한 증거가 불가능한 경우 산정방법(=실제 비용 지출시점을 기준으로 가치증가에 드는 비용을 산정한 다음 현가하는 방법)

* 대법원 2015다3914(본소), 2015다3921(반소), 2015다3938(반소)

1. 사용대차에서 차주는 민법 제611조 제2항, 제594조 제2항, 민법 제203조 제2항에 따라 유익비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종중이 종중원에게 종중 소유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사용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성립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유익비상환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토지에 대한 장기간의 무상 사용대차계약은 종중과 종중원 관계가 아니라면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매우 이례적인 데다가, 토지를 장기간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토지 사용이익을 향유한 종중원이 종중을 상대로 유익비상환청구를 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지나면 종중의 반환 요청을 받은 종중원이 유익비를 지출하였더라도 그 상환을 청구하지 않고 토지를 그대로 반환한다는 묵시적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2. 민법 제203조 제2항에서 정한 점유자의 지출금액은 점유자가 실제 지출한 금액을 의미한다. 비용을 지출한 것은 명백하나 유익비를 지출한 때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 자료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실제 지출한 금액에 대한 증거가 불가능하여 가치 증가에 드는 비용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지출 금액을 인정해야 하는 경우 실제 비용을 지출한 날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가치 증가에 드는 금액을 산정한 다음 그 금액에 대하여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가한 금액을 지출금액으로 인정해야 한다.

- ☞ 종중이 종중원을 상대로 수십 년간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왔다고 하면서 토지인도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등을 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종중원은 점유권원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개간비용 상당의 유익비상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묵시적 사용대차관계를 인정하면서 유익비상환청구를 받아들이고 감정 시점을 기준으로 한 투입비용 감정 결과를 채택하여 지출금액(개간비용)으로 인정하였으나, 대법원은
- ① 종중과 종중원 사이에 토지에 관한 묵시적 사용대차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관계와 형평 등을 감안하여 그러한 사용대차계약에는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지나면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에서는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지났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유익비상환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은 종중과 종중원 사이의 묵시적 사용대차계약에 관한 해석과 유익비상환청구권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고, ② 유익비상환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민법 제203조 제2항에서 정한 점유자의 지출금액은 점유자가 실제 지출한 금액을 의미하고 실제 지출한 금액에 대한 증거가 불가능한 경우 실제 비용을 지출한 날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가치 증가에 드는 금액을 산정한 다음 그 금액에 대하여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가한 금액을 지출금액으로 인정해야 하므로, 실제로 비용을 지출한 날이 아닌 감정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개량 투입비용 감정결과를 채택하여 지출금액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유익비상환에 따른 지출비용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이유로 원심에서 종중 패소부분을 파기한 사례

◆ **편의점에서 절도한 초등학생의 사진 및 신상정보를 편의점 출입문에 게시한 사안에서 명예훼손을 인정한 판결**

* 대구지방법원 2017고단6685

1. 범죄사실

피고인은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년 10월 27일 위 편의점에서 **초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피해자 ○○○(7세)이 비타500 1병, 초콜릿 등을 가방에 넣어 절취하는 것을 확인한 후 위 피해자의 아버지를 만나 합의금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100만원에서 시작하여 결국 50만원을 요구하는 피고인의 요구에 피해자의 부가 응하지 않아 결국 합의가 결렬되자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게시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7년 10월 30일 편의점 내로 출입하는 출입문 2개소에 A4용지에 ‘최근 도난 신상정보 공개’라는 제목으로 ‘**초등학교 1학년’이라고 기재하고 이름란은 공란으로 둔 채 ‘지속적으로 3개월 이상 물건을 훔쳐감’이라고 적은 게시물과 함께 그 밑에 위 피해자가 물건을 가방에 넣는 장면과 얼굴이 촬영된 CCTV 화면을 캡처하여 출력한 사진 8장을 부착하여 그곳을 출입하는 동부초등학교 학생 및 일반인들이 보도록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여 학교생활 등에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의 유무를 직권으로 조사한 후
공소기각을 선고한 사례

* 울산지방법원 2017노928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손○○, 피해자의 직장 상사인 H, 목격자 F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이를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년 9월 13일 울산 A자동차 제3공장 1층 남자화장실에서 화장실 바닥에 물을 뿌리다가 그곳 청소를 담당하는 피해자 손○○로부터 바닥이 미끄럽다고 제지를 받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살을 잡고 뒤로 밀쳐 폭행하였다.

나. 직권판단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위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당사자가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1818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도3172 판결 등 참조). 또한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나, 그러한 의사가 한번 명시적으로 표시된 이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어 이제 행위자를 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1018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제24번)에 첨부된 손○○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각 진술기재 및 수사결과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6년 9월 21일, 2016년 11월 2일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상해죄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등의 폭행을 당한부분에 대하여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고, 이와 같은점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은 최초에 이 사건을 별도로 인지 수사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고, 그 후 위 손○○가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 ◆ 의사가 노작성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며 내원한 환자에게 심근병증에 대한 주요검사를 실시하거나 이를 위한 해당 의료기관으로의 전원을 고려함이 없이 부정맥을 유발하여 심근병증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처방하기에 부적절한 약제를 처방한 경우 의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 대구고등법원 2017나22231

가. 피고의 의료과실

피고는 망인이 4개월 전부터 노작성 호흡곤란 증상을 보여왔고 이 사건 당시에 심한 호흡곤란을 호소하였으며, G병원에서 실시한 심전도검사서 심근허혈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보일뿐만 아니라 피고 의원에서 실시한 흉부 방사선 검사상 우심실 및 우심방 비대 소견이 관찰되었음에도, 이를 확인하기 위한 심전도, 심초음파검사 등 주요 검사나 그 검사를 받을 수 있는 해당 의료기관으로의 전원을 고려함이 없이 망인에게 부정맥을 유발하여 심근병증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처방하기에 부적절한 센시발정을 처방하였다. 그러므로 피고가 망인을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 처방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에게 망인에 대한 진료 및 처방상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다.

나. 인과관계의 존부

망인은 피고 의원을 방문한 날 오후에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G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고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추정 사인도 심실 세동, 심부전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비록 망인이 수개월 전부터 호흡곤란 증상을 앓아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당일 피고 의원을 스스로 방문하여 자신의 증상을 설명할 수 있는 상태였음에도 피고 의원을 방문한 때로부터

수 시간 내에 사망하였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심근병증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투약하기에는 부적절한 센시발정을 투약한 점, 한국의료분쟁조정 중재원에서도 피고가 심장에 이상이 있었던 망인에게 센시발정을 처방하여 망인이 부정맥으로 인한 심정지 유발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하였으며 달리 피고의 약제처방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과 피고의 과실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망인 사망의 주요 원인은 수개월 전부터 앓아온 노작성 호흡곤란 증상을 유발한 질환이었고 망인이 피고 의원을 방문할 당시에는 30m도 걷기 힘들 정도로 그 증상이 악화되었던 점, 상급병원인 G병원에서도 망인의 위 호흡곤란 증상을 유발한 질환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점 등을 피고가 배상하여야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의 손해 배상책임의 범위를 30%로 제한한다.



◆ 피고인의 1인 시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대법원 2017도13103

공직선거법 제256조는 ‘각종 제한규정 위반죄’라는 제목으로 제3항 제1호에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중 (아)목은 금지되는 행위로 공직선거법 제9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전물을 게시한 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한 광고물 등을 게시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고, 이 경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성명 사진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을 기준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에 따라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제90조 제1항 등) 또는 ‘선거에 관한 행위’(제115조 등) 등을 개별적으로 특정하여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 118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공직선거법 제115조에 정한 ‘당해 선거에 관하여’라 함은 당해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이 되지 아니하더라도 당해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빌미로 하는 등 당해 선거와 관련이 있으면 족하고(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도5298 판결 등 참조),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는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서 '선거운동을 위하여'보다 광범위하며, 선거운동의 목적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선거의 자유 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에서 설정된 것으로 보고 있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911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는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서 하여'라는 의미로서 '선거운동을 위하여'보다 광범위한 개념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조항에서 금지 대상이 되는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여야 위 조항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새누리당이 국회의원 후보자를 공천하기 전으로서 선거일 전 180일 이후인 2016. 2. 16.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청년구직자의 노력을 비웃는 채용비리 인사가 공천되어선 안 됩니다”라는 등의 문구와 최경환의 사진(사진에 최경환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 옆의 빨간색 “ ” 기호 안에 “공천”이라는 글자가 기재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1인 시위는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이 금지하는 광고물의 게시 행위에 해당하고, 피켓에 정당의 명칭과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성명 사진이 명시되어 있어 위 조항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 간주되며, 피고인의 1인 시위는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서 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므로, 비록 피고인의 1인 시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에게서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면서 1인 시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여야 위와 같은 죄가 성립한다고 전제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사례 1

민원인 - 농지 소유 제한 규정의 적용 범위(「농지법」 제6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농지법」 제6조제1항은 기존의 농지를 매매 등을 원인으로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농지가 아닌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해당 토지를 개간하여 농지로 조성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 회 답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농지법」 제6조제1항은 농지가 아닌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해당 토지를 개간하여 농지로 조성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 이 유

「농지법」 제2조제1호에서는 “농지”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함)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에서는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호에서는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농지법」 제2조제4호에서는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제1항에서는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농지법」 제6조제1항이 기존의 농지를 매매 등을 원인으로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농지가 아닌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해당 토지를 개간하여 농지로 조성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농지법」 제6조제1항에서는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해당 규정에 따라 그 소유가 제한되는 농지의 범위를 매매 등을 원인으로 승계취득하는 기존의 농지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농지법」 제6조제1항은 농민이 아닌 자의 “농지 취득”만을 규제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재지주(不在地主)의 확산 문제 즉, 농민이 아닌 자의 농지 취득만을 규제할 경우에는 일단 농민으로서 농지를 적법하게 취득했다면 그 이후 이농(離農) 등의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지 않게 되었더라도 해당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게 되어 농민이 아닌 자의 농지 소유가 증가될 수 있는바,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농민이 아닌 자는 농지의 취득뿐만 아니라 그 “소유 자체”를 금지하려는 것으로서(의안번호 제140850호 농지법안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농민이 아닌 자의 농지 소유를 막아 국민의

식량공급 기반이 되는 한정된 자원인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되도록 유도할 필요성은 농지가 아닌 토지를 개간하여 농지로 조성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존재한다고 할 것입니다(법률 제4817호 농지법 제정이유서 참조).

아울러, 「농지법」 제6조제2항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그 소유 재산 중 간척지·임야 등 부동산을 농지의 용도로 개발하여 이용·임대·매도하기 위한 경우로서 그 개발사업지구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제9호) 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만든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제10호다목) 등에 해당하면 「농지법」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임야나 공유수면 등을 개간 또는 매립하여 농지로 조성하는 경우 「농지법」 제6조제1항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농지법」 제6조제1항은 농지가 아닌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해당 토지를 개간하여 농지로 조성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사례 2

민원인 - 2017년 11월 28일 법률 제15108호로 일부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근로 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근로자의 유급휴가 산정 방법(「근로기준법」 제60조 등 관련)

● 질의요지

2017년 11월 28일 법률 제15108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년 5월 29일 시행되는 「근로기준법」의 시행 이후 2018년 5월 29일을 기준으로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근로자의 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2014년 1월 21일 법률 제1232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4년 7월 1일 시행된 「근로기준법」 제60조제3항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2017년 11월 28일 법률 제15108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년 5월 29일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이 적용되는지?

● 회 답

2017년 11월 28일 법률 제15108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년 5월 29일 시행되는 「근로기준법」의 시행 이후 2018년 5월 29일을 기준으로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근로자의 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2014년 1월 21일 법률 제1232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4년 7월 1일 시행된 「근로기준법」 제60조제3항이 적용됩니다.

● 이 유

2014년 1월 21일 법률 제1232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4년 7월 1일 시행된 「근로기준법」(이하 “기존 「근로기준법」”이라 함) 제60조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7년 11월 28일 법률 제15108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년 5월 29일 시행될 「근로기준법」(이하 “개정 「근로기준법」”이라 함) 제60조에서는 기존 「근로기준법」 제60조제3항을 삭제하였는바, 이 사안은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이후 2018년 5월 29일을 기준으로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근로자(이하 “시행일 기준 2년차 근로자”라 함)의 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기존 「근로기준법」 제60조제3항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개정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을 개정하면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다면 신법령 시행 당시에 진행 중인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신법령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신법령 시행 당시에 이미 확정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구법령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1. 3. 24. 회신 11-0008 해석례 참조).

그런데, 기존 「근로기준법」 제60조제3항은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한 유급휴가와 관련된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시행일 기준 2년차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주어야 할 사용자의 의무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가 1년 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였다는 객관적인 요건이 갖춰지면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이 1년이 되는 날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근로자가 1년 차에 사용한 유급휴가의 공제 시점도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이 1년이 되는 날이라고 보아야 하는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이후 시행일 기준 2년차 근로자의 유급휴가에 대한 법률관계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전에 이미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일 전에 확정된 법률관계에 대해 사용자에게 추가적으로 최대 1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소급입법으로 의무를 창설하는 것으로서 명시적으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어야 할 사항이므로, 그러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다면 구법령이 적용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유급휴가는 근로자에게는 권리인 반면, 사용자에게는 위반 시 벌칙을 수반하는 의무이므로(기존 「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참조), 개정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의 적용대상 범위를 사용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도7777 판결례 참조).

한편,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서는 사용자는 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급휴가를 사용하려면 근로자의 유급휴가 청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존 「근로기준법」 제60조제3항 규정만으로 근로자의 유급휴가청구권에 대한 법률관계가 이미 종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시행일 기준 2년차 근로자에 대해 개정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이 적용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의 취지는 근로자가 유급휴가를 언제, 어떠한 목적으로 이용할 것인지를 자유롭게 정하도록 하는 유급휴가 사용자 자유의 원칙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지, 근로자가 유급휴가를 사용자에게 청구함으로써 비로소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한 근로자의 유급휴가권 및 유급휴가를 주어야 할 사용자의 의무가 성립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제60조제5항을 이유로 시행일 기준 2년차 근로자의 유급휴가 산정에 대한 법률관계가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는 없고, 기존 「근로

기준법」 제60조제3항을 적용함으로써 개정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보다 시행일 기준 2년차 근로자의 유급휴가 기간이 짧아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실적인 불이익이지 법적인 불이익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이후 2018년 5월 29일을 기준으로 시행일 기준 2년차 근로자의 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기존 「근로기준법」 제60조제3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사례 3

국토교통부 -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이 취소되어 택시운전자격증명을 관할관청에 제출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제1호나목 등 관련)

● 질의요지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제1항 또는 「택시운송산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소 처분을 받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시 제출해야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제1호나목에 따른 양도자의 택시운전자격증명을 관할관청에 제출할 수 없더라도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있는지?

● 회 답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제1항 또는 「택시운송산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소 처분을 받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시 제출해야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제1호나목에 따른 양도자의 택시운전자격증명을 관할관청에 제출할 수 없더라도 운전자격 등록대장의 사본 등 양도자의 택시운전자격증명이 반납 및 폐기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 이 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함) 제26조제1항에서는 운수종사자[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이하 “운전자격”이라 함)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일정한 장소에 오랜 시간 정차하여 여객을 유치(誘致)하는 행위(제3호)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7조제1항 제4호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운전자격을 취득한 자가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그 운전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59조제3항 및 제4항에서는 관할관청(같은 규칙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관할이 정해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은 운전자격 취소 처분을 했을 때에는 처분대상자에게 운전자격증 또는 운전자격증명(여객자동차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운수종사자가 운전자격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받아 해당 사업용 자동차 안에 항상 게시해야 하는 증표를 말하며, 이하 같음)을 반납하게 한 후 이를 폐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택시운송산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함) 제16조제1항에서는 택시운수종사자(여객자동차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하 같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제1호)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시운수종사자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면 운전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여객자동차법 제14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제2항에 따르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그 사업을 양도할 수 없으나, 사업구역별로 사업면허의 수요·공급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그 사업을 양도·양수할 수 있고,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제1호나목에서는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가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양도자의 택시운전자격증명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법 제87조제1항 또는 택시발전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운전자격 취소 처분을 받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시 제출해야 하는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제1호나목에 따른 양도자의 택시운전자격증명을 관할관청에 제출할 수 없더라도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35조제8항에서는 관할관청이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의 인가 처분을 하면 양도자의 택시운전자격증명을 폐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조 제5항제1호나목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의 인가 신청 시 양도자의 택시운전자격증명을 관할관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관할관청이 그 인가처분 후 양도자의 택시운전자격증명을 용이하게 폐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데, 같은 규칙 제5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면 관할관청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자격을 취소하는 처분을 했을 때에는 처분대상자로 하여금 운전자격증 또는 운전자격증명을 반납하게 하여 이를 폐기해야 하는바, 운전자격 취소 처분을 받아 택시운전자격증명이 폐기된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은 이미 폐기된 양도자의 택시운전 자격증명을 제출받아 다시 폐기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53조제2항에서는 여객자동차법 제87조에 따라 운전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운전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운전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지속하려는 의사가 없는 자에 대해 운전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 다시 시험에 합격하여 운전자격을 취득해야만 그 사업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한다면, 해당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서는 오로지 해당 사업을 양도할 목적으로 운전자격을 다시 취득해야 하는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되어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에는 양도자의 택시운전 자격증명에 갈음하여 그 증명이 폐기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양도·양수 인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59조제5항에서는 관할관청이 운전자격 취소처분을 하고 운전자격증 또는 운전자격증명을 반납 받아 폐기한 경우 해당 시험시행기관(교통안전공단 또는 택시연합회를 말함)은 운전자격 등록을 말소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운전자격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운전자격이 취소된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이미 폐기된 양도자의 택시운전자격증명 대신 운전자격 등록대장 사본을 관할관청에 제출함으로써 양도자의 택시운전자격증명이 반납 및 폐기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두999 판결례 참조).

따라서,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법 제87조제1항 또는 택시발전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운전자격 취소 처분을 받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시 제출해야 하는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제1호나목에

다른 양도자의 택시운전자격증명을 관할관청에 제출할 수 없더라도, 운전 자격 등록대장의 사본 등 양도자의 택시운전자격증명이 반납 및 폐기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운전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후 그 사업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자의 택시운전자격증명 대신 운전자격 등록대장의 사본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내용을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35조제5항 제1호나목에 명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례 4

법무부 - 「국세기본법」 제84조제1항 및 제2항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국세행정에 대한 협조 등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84조제1항 및 제2항이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근거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지?

● 회 답

국세행정에 대한 협조 등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84조제1항 및 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근거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 유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같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

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제1호)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제2호) 등의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84조제1항에서는 세무공무원은 직무를 집행할 때 필요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함)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국세행정에 대한 협조 등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84조제1항 및 제2항이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근거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점을 고려하면, 같은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란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제공을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 10. 14. 회신 14-0621 해석례, 법제처 2017. 12. 4.

회신 17-0506 해석례 등 참조).

그런데, ① 「국세기본법」 제84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세무공무원은 직무를 집행할 때 필요하면 국가기관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협조의 사전적 의미는 “힘을 보태어 돕는다는 것”으로서(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국가기관등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국가기관등이 협조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어 해당 규정의 협조는 광의의 개념인 점, ② 「국세기본법」 제84조제1항 및 제2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특별한 보호를 받는 개인정보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범위 외의 목적으로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닌 세무공무원에게 제공될 수 있다는 내용을 일반 국민이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세행정에 대한 협조 등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84조제1항 및 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근거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과세관청이 조세법령을 적정·공평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가 현실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등 조세 법률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닌 세무공무원에게 제공될 수 있다는 내용을 국민이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례 5

부산광역시 - 반려견 운동·휴식시설 설치 행위가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경우”에 해당하여 하천점용허가가 금지되는지 여부(「하천법」 제33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위한 운동·휴식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하천법」 제33조제4항제3호에 따라 하천점용허가가 금지되는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 회 답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위한 운동·휴식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하천법」 제33조제4항제3호에 따라 하천점용허가가 금지되는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이 유

「하천법」 제33조제1항에서는 하천구역(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토지의 구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안에서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제3호) 등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이하 “하천점용허가”라 함)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하천관리청은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제4호) 등을 하기 위한 경우에는 하천점용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이하 “반려견”이라 함)를 위한 운동·휴식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하천법」 제33조제4항제3호에 따라 하천점용허가가 금지되는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가축”은 일반적으로 집에서 기르는 짐승으로서 소, 말, 돼지, 닭, 개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것이고(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가축과 관련한 다른 법령에서는 가축의 범위에 개를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는바(「축산법」 제2조제1호·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1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같은 법 시행령 제2조), 「하천법」 제33조제4항제3호에 따른 “가축”에는 개가 포함될 수 있고,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도 “가축”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방목”이란 가축을 놓아 기르는 일을 말하고, “사육”이란 어린 가축이나 짐승이 자라도록 먹여 기르는 일을 말하는데(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반려견을 위한 운동·휴식 시설은 특정한 가축이 계속 머물며 먹이활동을 하거나 수면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반려견이 비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운동 및 휴식을 취한 후 각 가정으로 돌아간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축사나 목장과는 차이가 있는바, 반려견을 위한 운동·휴식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가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문언상 명확하지 않으므로 「하천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이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살피건대, 「하천법」은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하고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보전하며 하천의 유수(流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제1조) 하는 법률로서, 같은 법 제3조제3항에서는 국민에게 하천의 보전과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같은 법 제33조제4항에

서는 하천의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제5호)를 위한 하천점용허가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6조에서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의 흐름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제7호)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법 취지 및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하천법」 제33조제4항제3호에 따른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가 하천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할 것인데, 하천구역에 반려견을 위한 운동·휴식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이용자들은 해당 시설에 개를 수시로 풀어놓게 되고, 그 결과 불특정 다수의 개가 계속하여 그 시설에 머물며 분노 등을 배출함으로써 하천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킬 수 있어 특정한 가축의 무리를 그 곳에 상주시키는 경우와 차이가 없게 되는데, 반려견을 위한 운동·휴식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도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경우로 보아 하천점용허가를 금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반려견을 위한 운동·휴식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하천법」 제33조제4항제3호에 따라 하천점용허가가 금지되는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반려견을 위한 운동·휴식시설을 설치하는 행위가 하천점용허가 금지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언상 명확하지 않으므로, 「하천법」 제33조제4항제3호에 괄호 규정을 두는 등의 방법으로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에 “반려견을 위한 운동·휴식시설을 설치하는 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례 6

보은군 - 시·군·구에 배분된 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의 배분·집행 기준(「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등 관련)

● 질의요지

댐수탁관리자로부터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지원금을 배분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가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원금을 배분하는 기준인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에 따라 읍·면·동별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지원금을 배분하여 해당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지?

● 회 답

댐수탁관리자로부터 댐주변지역의 주민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을 위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지원금을 배분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가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원금을 배분하는 기준인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에 따라 읍·면·동별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지원금을 배분하여 해당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댐건설법”이라 함) 제43조 제1항에서는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댐건설이 완료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댐 주변지역의 주민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이하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이라 함)에 관한 계획(이하 “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이라 함)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제1호), 댐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댐건설법 제44조제1항에서는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댐관리청이나 댐사용권자의 출연금(제1호) 등으로 조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댐건설법 시행령”이라 함) 제44조제2항에서는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산정된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함)을 같은 영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을 관할하는 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배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댐수탁관리자로부터 지원금을 배분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가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원금을 배분하는 기준인 댐건설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라 읍·면·동별로 지원금을 배분하여 해당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댐건설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및 같은 영 별표 8은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이 포함된 시·군·구가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업비를 배분하기 위한 기준을 정한 것이므로(법제처 2010. 12. 16. 회신 10-0450 해석례 참조), 이 사안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지원금을 배분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규정에 따라 읍·면·동별로 지원금을 배분하여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댐건설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제1호에서는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중 지역지원사업의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행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별표 6 제1호에서는 지역지원사업으로 공동영농시설, 환경농업 기자재 및 유통시설, 댐 주변경관을 활용한 휴양 및 레저 관련 시설 설치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업들이 반드시 읍·면·동 단위로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고, 지역 여건 및 지원금의 규모 등에 따라 시·군·구 단위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시장·군수·구청장은 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 및 지원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댐수탁관리자로부터 지원금을 배분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가 댐주변 지역지원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원금을 배분하는 기준인 댐건설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라 읍·면·동별로 지원금을 배분하여 해당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사례 7

국토교통부 - 자동차 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자동차 이전등록의 신청 주체(「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사망한 자동차 소유자의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 공동상속인 중 1명이 다른 공동상속인과 협의 없이 해당 자동차를 「민법」 제1009조의 법정상속분에 따른 공동상속인 전원의 공동소유로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

● 회 답

사망한 자동차 소유자의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 공동상속인 중 1명이 다른 공동상속인과 협의 없이 해당 자동차를 「민법」 제1009조의 법정상속분에 따른 공동상속인 전원의 공동소유로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유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서는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서는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함)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에서는 상속에

의한 이전등록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등록 관청에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법」 제1005조 본문에서는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06조에서는 상속인이 수인(數人)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07조에서는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사망한 자동차 소유자의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 공동상속인 중 1명이 다른 공동상속인과 협의 없이 해당 자동차를 「민법」 제1009조의 법정상속분에 따른 공동상속인 전원의 공동소유로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에서는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이전등록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민법」에서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되(제1005조 본문),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재산은 공유로 한다(제1006조)고 규정하고 있어 사망한 자동차 소유자의 공동상속인이 해당 자동차를 공동소유하게 되므로 각 공동상속인은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자동차관리법」에서는 공동상속인 중 1명이 다른 공동상속인과 협의 없이 단독으로 법정상속분에 따른 공동상속인 전원의 공동소유로 자동차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자동차 소유자의 사망과 동시에 그 권리능력은 소멸되므로 자동차 소유자가 소유하던 모든 재산은 사망 시에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당연 승계하고(「민법」 제1005조 및 제1009조),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에 속하는데(같은 법 제1006조)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는 공유자가 각자 할 수 있는 점(같은 법 제265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동상속인 간에 협의 없이도 공동상속인 중 1명은 법정 상속분에 따른 공동상속인 전원의 명의로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해야 효력이 발생하는(『자동차관리법』 제6조) 등 부동산 등기와 유사한 “등록”제도를 취하고 있는데, 부동산 상속등기의 경우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본인만의 상속지분에 대한 상속등기는 불가능하나(『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2호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52조제7호), 상속인 전원의 명의로 법정상속분에 따른 등기신청은 허용하고 있는바(등기선례 제5-276호, 대법원 2012. 4. 16.자 2011스191·192 결정례 및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누19535 판결례 등 참조), 사망으로 인한 이전등록도 부동산 상속등기와 마찬가지로 일부 공동상속인의 신청에 따라 공동상속인 전원의 명의로 이전등록을 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약 자동차를 공동상속인 전원의 명의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이전등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동상속인 전원이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하고 공동상속인 중 1명은 신청할 수 없다고 하면, 공동상속인 중 일부에게 행방불명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전등록이 불가능하여 장기간 사망한 피상속인의 명의로 남아 자동차 등록 명의자와 실제 권리자의 불일치로 거래 안전을 해칠 수 있고, 자동차 관리주체의 공백 상태를 최소화하여 자동차가 적절하게 유지·관리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하는 데에 고려해야 합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사망한 자동차 소유자의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 공동상속인 중 1명이 다른 공동상속인과 협의 없이 해당 자동차를 『민법』 제1009조의 법정상속분에 따른 공동상속인 전원의 공동소유로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례 8

소방청 - 소방시설공사업 법인의 대표자와 소방시설감리업 법인의 대표자가 친족인 경우 동일한 소방시설에 대한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할 수 있는지 여부(「소방시설공사업법」 제24조제4호 등 관련)

● 질의요지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법인의 대표자와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법인의 대표자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경우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4조제4호에 따른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한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는 친족관계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 회 답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법인과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법인이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대표자의 개인기업에 불과한 경우 등 해당 법인의 법인격을 부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해당 법인의 대표자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경우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4조제4호에 따른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한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는 친족관계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 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서는 “소방시설공사업”이란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이하 “시공”이라 함)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다목에서는 “소방

공사감리업”이란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 소방시설 공사가 설계도서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시공 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이하 “감리”라 함)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제1항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및 방염(이하 “소방시설공사등”이라 함)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자본금,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 등에게 소방시설업을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소방시설공사법」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한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자(이하 “공사업자”라 함)와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감리업자”라 함)가 같은 자인 경우를, 같은 조 제4호에서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경우를 각각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777조에서는 친족의 범위를 8촌 이내의 혈족(제1호), 4촌 이내의 인척(제2호) 및 배우자(제3호)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법인의 대표자와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법인의 대표자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경우가 「소방시설공사법」 제24조제4호에 따른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한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는 친족관계인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소방시설공사법」 제24조제1호에서 “공사업자와 감리업자가 같은 자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같은 조 제4호에서는 주체를 명시하지 않고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경우”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소방시설공사법」 제24조제4호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누구를 기준으로 친족관계를 판단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그런데 「소방시설공사법」 제24조에서는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한 시공·감리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조문의 제목을

“공사업자의 감리 제한”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제24호에서는 같은 법 제24조를 위반하여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한 경우에 “소방시설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같은 법 제24조는 “소방시설업자” 중 “공사업자” 및 “감리업자”를 수범자로 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계는 같은 조 제1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모두 “공사업자”와 “감리업자”간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4조제4호는 공사업자와 감리업자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경우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한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인데,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자연인 간의 관계에서만 성립할 수 있는 것이므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4조제4호는 공사업자와 감리업자가 자연인인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으로서 공사업자와 감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같은 규정이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며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 참조).

그런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4조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9조제1항제24호 및 제10조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 및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의 취소, 영업정지 처분 또는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게 되는데, 같은 법 제24조제4호가 자연인인 공사업자와 감리업자가 친족관계인 경우 뿐만 아니라 법인인 공사업자와 감리업자 각각의 대표자 간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까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은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를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입니다. 다만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여지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례 참조),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4조제4호가 법인인 공사업자와 감리업자 각각의 대표자 간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법인과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법인이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대표자의 개인기업에 불과한 경우 등 해당 법인의 법인격을 부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해당 법인의 대표자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경우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4조제4호에 따른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한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는 친족관계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법인의 의사결정이 그 법인의 대표자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법인인 공사업자와 감리업자 각각의 대표자가 친족인 경우에도 자연인인 공사업자와 감리업자가 친족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감리 업무 수행이 곤란할 수 있는바, 법인인 공사업자와 감리업자 각각의 대표자가 친족인 경우에도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한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도록 할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4조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례 9

광주광역시 광산구 -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는 방식으로 매입한 국유의 토지에 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산업단지에 입주한 입주기업체가 「국유재산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누어 납부하는 방식으로 매입한 국유 토지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에 따라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공장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임대받은 토지”로 볼 수 있는지?

● 회 답

산업단지에 입주한 입주기업체가 「국유재산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누어 납부하는 방식으로 매입한 국유 토지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에 따라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공장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임대받은 토지”로 볼 수 있습니다.

● 이 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제2조제18호에서는 “입주기업체”란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제조업, 지식산업 등을 운영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같은 법 제3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단지에 있는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 또는 공장 및 건축물,

그 밖의 시설(국유인 경우에는 그 관리청으로부터 관리전환을 받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의 관리·처분에 관한 지정을 받은 것만 해당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에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를 임대받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받은 토지 위에 공장 등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유재산법」 제50조제2항에서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입주기업체가 「국유재산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누어 납부하는 방식으로 매입한 국유 토지를 산업집적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공장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임대받은 토지”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에 두어야 하고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정·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해야 합니다(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판결례 참조).

그런데 산업집적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매각”과 “임대”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국유 토지를 “임대”받은 입주기업체가 “임대” 받은 토지 위에 공장 등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임대”의 경우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매각”의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같은 조 제3항은 국유 토지를 “임대”받은 경우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집적법 제34조제3항에서 “임대”의 경우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매각”의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국유 토지가 입주 기업체에 매각되어 소유권 이전까지 완료된 경우 해당 토지는 더 이상 「국유재산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매각”의 경우에 대하여 국유재산에 건물 등을 축조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유재산법」 제18조에 대한 특례를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인 것이지, 매각된 국유 토지에 대해서는 산업집적법 제34조제3항의 적용을 배제하여 공장 등의 설치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산업집적법 제34조제3항은 산업단지 안에 있는 국유 토지에 대한 정당한 사용·수익 권한을 확보한 입주기업체 등은 「국유재산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토지에 공장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의 집적(集積)을 활성화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산업집적법 제34조제3항은 국유 토지를 “임대”하여 사용·수익 권한을 확보한 경우뿐만 아니라 국유 토지를 매각대금을 나누어 납부하는 방식으로 “매입”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만약 산업집적법 제34조제3항을 국유의 토지를 “임대”받은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본다면 일정기간 동안만 해당 토지를 사용·수익하고 임대계약 종료 후에는 원칙적으로 공장을 철거해야 하는 등 해당 토지에 대한 원상 회복 의무를 가지는 임차인은 공장 등을 설치할 수 있는 반면, 국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여 공장을 설치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산업단지 내에서 공장을 운영하려는 매수인은 공장 등을 설치할 수 없어 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또한 위와 같이 볼 경우 국유 토지에 공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국유 토지를 먼저 임대하여 산업집적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공장을 설치한 후

다시 그 토지를 매입하거나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지 않고 일시에 지급하여 토지를 매입한 후 공장을 설치해야 할 것인데, 이는 매수인과 국가 모두에게 불필요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제2호가목 등 참조 등이 있는 경우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국유재산법」 제50조제2항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입주기업체가 「국유재산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누어 납부하는 방식으로 매입한 국유 토지를 산업집적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공장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임대받은 토지”로 볼 수 있습니다.



사례 10

민원인 - 사용승인을 받지 않는 신고 대상 용도변경의 경우, 용도 변경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소유자가 별도로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해야 하는지 여부 (「건축법」 제19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건축물의 소유자가 「건축법」 제1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 용도변경의 신고를 한 후 그 용도변경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 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용도변경 신고를 수리한 행정청이 직권으로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을 변경해야 하는지?

● 회 답

건축물의 소유자가 「건축법」 제1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 용도변경의 신고를 한 후 그 용도변경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이 유

「건축법」 제19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건축법」 제19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함)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용도변경 신고대상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허가나 신고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의 사용승인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22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면서(본문), 다만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대수선에 해당되는 공사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단서).

그리고 「건축법」 제38조제1항에서는 시장등은 건축물의 소유·이용 및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제1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4호) 등에 해당하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서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중 하나로 그 밖에 기재내용의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제3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대장규칙”이라 함) 제3조에서는 “그 밖에 기재내용의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중 하나로 건축물의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따라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제1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축물대장규칙 제18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건축물 표시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서에 건축물현황도 등을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신청해야 하되(본문),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된 경우에는 시장등이 직권으로 사용승인서에 따라 변경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단서), 이 사안은 건축물의 소유자가

「건축법」 제1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 용도변경의 신고를 한 후 그 용도변경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규칙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 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용도변경 신고를 수리한 행정청이 직권으로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을 변경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건축법령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은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에 따르는 것을 원칙(법제처 2008. 5. 1. 회신 08-0011 해석례 및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다206075 판결례 참조)으로 하므로 시장등이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으려면 별도의 명문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용도변경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 변경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대장규칙 제18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에서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시장등에게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본문)와 시장등이 직권으로 변경해야 하는 경우(단서)로 나누어 규정하면서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에 따른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 사유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반면, 시장등의 직권변경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된 경우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에 대한 공법상의 규제, 지방세의 과세대상, 손실보상가액의 산정 등 건축행정의 기초자료이므로 그 변경행위는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건축물대장은 등기부 작성의 기초자료로서 건축물 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면(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두22655 판결례 참조), 행정청이 건축물 소유자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직권으로 건축물대장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건축법령의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볼 때,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된 경우에 대해서만 시장등이 직권으로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을 변경할 수 있고, 사용승인을 받지 않는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한 권한이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안과 같은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규칙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서에 건축물현황도 및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대장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르면 시장등은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에 따라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신청 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현황과 합치하는지 여부를 대조·확인해야 하므로 신청 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이 변경되지 않을 것인데, 만약 건축물 소유자의 용도변경 신고만으로 행정청이 직권으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용도를 변경해야 한다고 해석한다면 건축물의 실제 현황에 대한 확인 없이 해당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용도가 변경되어 건축물대장상의 용도와 실제 건축물의 용도가 불일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에 고려해야 합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건축물의 소유자가 「건축법」 제1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 용도변경의 신고를 한 후 그 용도변경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규칙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례 1

【2017-246,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처분 취소청구】

[주 문] 피청구인이 2017. 8. 23. 청구인에게 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 ○○면 ○○리 ○○○번지 전, 423㎡(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지원 2016타경1063호 강제경매 절차의 매각기일에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되었는데, 매각결정기일에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제출하기 위해 2017. 8. 22. 피청구인에게 위 토지에 대한 농업경영계획을 첨부하여 농지취득자격 증명신청(이 사건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농지 일부분 중 주택 부속 토지 및 잡목이 우거져 있어 농업경영 등에 이용하기 어려운 상태로 복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17. 8. 23.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반려 통보(이 사건 반려처분)하였다.

2.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7. 8. 23. 청구인에게 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3. 당사자 주장요지

가. 청구인 주장

이 사건 농지 일부에 건축된 농가주택은 1979년도에 불법으로 인접 필지 소유자가 위 농지에 침범하여 지어진 것을 ○○군에서 현재까지 일반건축물 대장으로만 관리하고 위법조치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등 공무원의 직무유기로 그동안 방치되어 경매보증금 몰취 위기로 그 피해를 청구인이 입게 되며, 이 사건 농지(밭) 전체가 주택 부속토지 및 잡종지로 사용하고 있는 등 불법으로 형질변경 및 건축물이 준공되어 현재로는 농업경영에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농지 취득증명원 발급이 어렵다는 취지로 반려했으나 건축물은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인접필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를 침범해 지은 것이며, 나머지 면적은 목전밭으로 방치되어 있는 실정으로, 비록 토지 일부에 불법으로 건축물이 들어서 있고, 목전밭이라 하더라도 계속 방치하는 것보다는 농업경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즉, 농지의 본래 용도에 활용하는 것이 관련 법인 농지법등의 목적에 부합된다.

나. 피청구인 주장

- 1) 농지법 제2조에 의하면 “농지란 전·답, 과수원, 그밖의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와 이 토지의 개량시설과 이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의하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심사요령 제7조 제3항 제1호 및 제8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형질변경등으로 인한 통상적으로 경작 또는 재배가 곤란한 경우에는 농지로의 복구계획서를 제출하거나

농업경영계획에 복구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한 경우에는 그 계획이 실현 가능할 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2) 청구인이 신청한 대상농지는 지목이 “전”으로 농지법 제8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농지로서 피청구인이 사건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의 적합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현지를 조사한 결과, 그 지상에 □ 모양의 목조 기와지붕 1식의 건물(주택)이 일부(약20㎡) 점유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경사진 부분의 농지로서 잡목이 우거져 있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이다. 청구인은 토지 일부에 불법으로 건축물이 들어서 있고, 목전밭이라 하더라도 계속 방치하는 것보다는 농업경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즉, 농지의 본래 용도에 활용하는 것이 관련 법인 농지법등의 목적에 부합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 주택의 소유자(△△광역시 △△ △△로 *** 최△△)는 귀농을 목적으로 2013. 9.경 경매로 토지 및 주택을 구입한 상태이며, 이 사건 농지는 주택부속 토지 점유 및 진입로 또한 불분명하여 주택소유자와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은 복구계획서나 영농계획서의 제출만으로 당연히 발급되는 것이 아니라 실현가능성과 그 밖의 요건을 심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발급이 가능하다 할 것으로 청구인의 신청지를 확인한 결과 건물(주택)이 차지하는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 및 진입로 확보가 있기 전에는 농작물 경작 등 농업 경영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신청을 반려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관계법령

가. 농지법 제2조·제6조·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나.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심사요령 제7조, 제8조, 제9조

5. 판 단

가. 사실인정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각종 증거자료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과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의 현장검증 등 직권으로 조사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1) 채무자 소유의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지원 2016 타경1063호로 부동산임의(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자 청구인은 매각 기일인 2017. 8. 21.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최고가매수신고를 하고, 피청구인에게 같은 해. 8. 22. 이 사건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그 다음 날 이를 반려(이 사건 처분)하였다. 이에 법원은 농지취득 자격증명 부제출을 이유로 매각불허가 결정하였고, 청구인은 위 불허가 결정에 대해 2017. 8. 30. 즉시항고하여 현재도 사건이 계속 중이다.
- 2) 이 사건 토지와 인접토지는 원래 동일인인 ○○○의 소유였고, 인접 토지상의 주택은 위 ○○○이 소유하였는데, 이 사건 인접토지와 그 지상 주택이 현재의 소유자(아래에서 보는 최**)에게 경매로 소유권이전된 것이다.
- 3) 피청구인이 2017. 8. 23.에 한 이 사건 처분의 반려사유는 다음과 같다.

○○면 ○○리 ○○○¹⁾는 농지법상 농지로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 농지 이나 해당농지 전체가 주택 부속토지 및 잡종지로 사용, 불법으로 형질변경 및 건축물이 준공되어 현재로는 농업경영에 이용할 수 없어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심사요령 제9조제3항제4호에 의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불가함.
- 4) 이 사건 농지의 현황을 보면, 이 사건 농지와 인접한 ○○면 ○○리 ○○○번지 소유자 최**의 주택(목조 기와지붕,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일부(약20m²)가 이 사건 농지를 점유(이하, 이 사건

1) 이 사건 농지

주택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는 부분을 ‘이 사건 점유부분’이라 한다) 하고 있고, 그 나머지는 풀과 잡목이 우거져 있다. 이 사건 주택이 이 사건 농지에 대해 차지하는(이 사건 점유부분) 비율은 약 4.7% $\{(20 \div 423) \times 100\}$ 이다.

- 5) 청구인이 이 사건 신청시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에 의하면 이 사건 농지에 감나무를 재배할 목적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1) 먼저, 청구인은 ○○군수를 피청구인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으나 우리 위원회는 행정심판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 사건의 피청구인을 ○○면장으로 경정한다.
- 2) 피청구인은 이 사건 농지는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점유 및 진입로 또한 불분명하여 인접한 이 사건 주택소유자와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은 복구계획서나 영농계획서의 제출만으로 당연히 발급되는 것이 아니라 실현가능성과 그 밖의 요건을 심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발급이 가능하다고 할 것으로, 청구인의 신청지를 확인한 결과 건물(주택)이 차지하는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 및 진입로 확보가 있기 전에는 농작물 경작 등 농업경영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신청을 반려한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가) 농지법 제2조 제1호는 “농지”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라고 하고, 같은 법 제8조제1항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농지취득자격심사요령 제9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는 신청대상 농지가 「농지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형질이 변경되었거나 불법건축물이

있는 농지인 경우 자격증명 미발급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은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점유부분이 농지로서의 현상이 변경된 상태가 일시적이거나 농지로서의 원상회복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인지가 특히 문제된다 할 것이다.

나) 대법원은 어떤 토지가 농지법이 규정한 농지인지의 여부는 그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하지만, 공부상 지목이 전(田)이나 답(畓)인 토지가 농지로서의 현상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변경 상태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농지로서의 원상회복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토지는 여전히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지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9. 2. 23. 98마 2604 결정, 대법원 2012. 7. 31. 2012마336 결정 등 참조).

다) 앞에서 본 인정된 사실과 농지법의 규정 및 관련판례의 법리를 볼 때, 이 사건 토지의 4.7%(이 사건 점유부분)를 제외한 대부분은 풀과 잡목이 우거진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농지로서 원상회복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은 문제되지 않으나, 이 사건 점유부분은 목조기와 지붕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이 청구외 타인의 소유인 점에서 사실상·법률상 쉽게 철거할 수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여 원상회복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의 형질변경의 원인이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으려는 청구인에게 있지 않고, 또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도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 사건 토지의 형질변경에 아무런 원인도 제공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점유부분이 차지하는 이 사건 토지의 4.7%를 제외하고는 농지로서 기능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점, 다만 위 이 사건 점유부분에 대해 원상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 소유자와 인접소유자 간에 민사소송으로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당장 위 점유부분에 대해 법정지상권 인정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여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는 불분명하고, 그 부분만큼은 원상회복이 용이하게 보이지 아니한다.

라)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전체가 농업경영에 이용할 수 없다고 함부로 단정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사유로 “해당농지 전체가 주택 부속토지 및 잡종지로 사용, 불법으로 형질 변경 및 건축물이 준공되어 현재로는 농업경영에 이용할 수 없다”고 함으로서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른 위법이 있고, 또 이 사건과 같이 토지 형질변경에 이른 원인에 청구인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고, 권리관계를 다룰 것이 예상되는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에게도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이 사건 점유부분에 대해서는 사회통념상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설사 이 사건 점유부분에 대해 언젠가는 원상회복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경우까지 원상회복이 실현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으로 하여금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게 한다면 이는 청구인에게 너무나 가혹한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하다.

6.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사례 2

【2017-263, 전기사업(태양광발전)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7. 8. 21. 청구인에게 한 전기사업(태양광발전) 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7. 5. 30. ○○군 ○○면 ○○리 ○○○외 11필지(이하 ‘이 사건 신청부지’라 한다)에 전기사업(태양광발전)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7. 8. 21. 이 사건 신청부지가 「○○군 계획 조례」에 의해 개발행위허가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에 대해 불허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자, 이에 청구인이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7. 8. 21. 청구인에게 한 전기사업(태양광발전)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3. 당사자 주장요지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6. 12. 27. 이 사건 신청지에 전기사업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처리완료 예정일(2017. 3. 23.) 하루 전인 2017. 3. 22. 주민 수용성 문제로 취하토록 하였으며(○○1저수지 태양광발전소의 허가조건) 일정 시간 지난 후 민원 재접수시 전기사업 허가를 구두로 약속하였다.

청구인은 『○○군계획 조례』(시행 2017. 6. 13.) 시행 전인 2017. 5. 30. 전기사업(태양광발전)허가 신청(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군 계획 조례』 부칙(제2244호 2016. 12. 29.)의 제2조(경과조치)에 의거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결정,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와 신청 또는 청구중인 사항에 관하여는 종전에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나, 피청구인은 2017. 6. 13. 일부 개정된 『○○군 계획 조례』를 근거로 하여 전기사업(태양광발전)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에 대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 1) 청구인이 주장하는 ‘종전 부칙’인 2016. 12. 29. ‘개정 ○○군계획 조례’ 부칙의 입법경위 및 취지는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군계획 조례 개정으로 이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토지 등 재산권에 대한 개발행위에 대하여 종전에 허가 신청자 및 허가받은 자의 기득권 및 신뢰를 법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였다.
- 2) 2017. 6. 13. 시행‘개정 ○○군계획 조례’의 입법 취지는 발전시설, 폐차장, 고물상, 레미콘, 석재, 가축분뇨, 폐기물처리장 등 군민의 생활환경을 저해하고 무분별하게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시설의 입지를 주민과 사업자가 서로 상생 가능하도록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청구인은 조례 개정 이전에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 3) 피청구인은 전기사업(태양광발전)허가 시 『전기사업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전기사업 허가의 심사기준)에 의하여 전기설비의 건설 계획 및 운영 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해야 하며 부지확보가 적정함을 규정하고 있기에, 이 사건 신청에 대한 검토기간(‘17. 5. 30. ~ 8. 23.) 중 이 사건 신청에 대한 해당 실·과·소 개별법 검토의견 조희 및 한국전력공사 전력 타당성 조사를 통해 해당부지(수면)에 전기사업(태양광발전)이 추진 가능한 지를 검토하여 전기사업 허가

여부를 통보하고 있다. 전기사업(태양광발전)허가 신청 개별법 의견 조회 결과, ○○군 개발행위허가 주무부서인 민원봉사과로부터 해당 부지(수면)은 『○○군계획 조례』에 근거하여 개발행위허가 불가 의견을 회신 받았으며, 향후 전기사업(태양광발전) 추진이 불가하였기에 이 사건 전기사업(태양광발전)허가 신청에 대한 불허가 처분은 타당하다.

4. 관계법령

- 가. 전기사업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호
- 나. ○○군 계획 조례(2016. 12. 29.) 제18조 및 부칙<제2244호>
- 다. ○○군 계획 조례(2017. 6. 13.) 제18조 및 부칙<제2268호>

5. 판 단

가. 사실인정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각종 증거자료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과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의 현장검증 등 직권으로 조사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1) 청구인은 2016. 12. 27. 피청구인에게 전기사업허가(시설용량 3천 킬로와트 이하)의 민원을 제출하였으나, 2017. 3. 22. 위 민원을 취하하였다.
- 2) 청구인은 2017. 5. 3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신청부지에 대해 청구인은 2017. 5. 19.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 3) 피청구인은 2017. 8. 7. 이 사건 신청에 대한 관련부서에 개별법 검토 의견 및 한국전력공사 전력 타당성 검토 의견을 요청하고, 2017. 8. 14 관련부서로부터 이 사건 신청에 대한 개별법 검토의견을 회신 받아 2017. 8. 21.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인데, 이 사건 처분의 불허가 사유는 다음과 같다.

〈불허가 사유〉

- 전기사업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전기사업 허가의 심사기준)에 의하여 전기설비의 건설계획 및 운영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해야 하며 부지확보가 적정해야 전기사업 허가 가능
- 전기사업 허가 신청 부지는 군도에서 500m안에 입지하여 ○○군계획조례 제18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불가하여 전기사업허가 불허 처분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직권으로 판단한다.

피청구인은 전기사업허가신청 단계에서 ○○군 계획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적용하고, 이에 기하여 이 사건 불허가처분을 한 것인데, 이의 적법성을 살펴보면, 판례(대법원 2000. 3. 24. 선고 98두8766 판결)는 하나의 민원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 등에 의하여 다수 관계기관의 허가·인가·승인·추천·협의·확인 등(이하 ‘인·허가’라고 한다)을 받아야 하는 복합민원의 경우 필요한 인·허가를 일괄하여 신청하지 아니하고 그 중 어느 하나의 인·허가만을 신청한 경우에도 그 근거 법령에서 다른 법령상의 인·허가에 관한 규정을 원용하고 있거나 그 대상 행위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절대적으로 금지되고 있어 그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그 인·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런데 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제2호에서는 전기사업의 허가기준으로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을 들고 있고, 이는 전기사업허가가 있었음에도 그 사업을 실현할 수가 없어 결과적으로 허가된 구역이 이용되지 않은 채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둔 심사기준이어서 전기사업의 목적 실현에 관하여 관계 법령 등에 의한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인·허가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도 그 내용으로 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0. 3. 24. 선고 98두8766 참조), 피청구인이 이 사건 조례 제18조 제3항제1호(국도지방도군도에서 직선거리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를 이 사건 불허가 처분의 사유로 한 것은 적법하다.

- 2) 다음으로, 청구인은 ○○군계획 조례(시행 2017. 6. 13.) 시행 전인 2017. 5. 30. 전기사업(태양광발전)허가 신청(이 사건 신청)을 하였는데, 『○○군 계획 조례』 부칙(제2244호 2016. 12. 29.)의 제2조(경과조치)에 의거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결정,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와 신청 또는 청구 중인 사항에 관하여는 종전에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나, 피청구인은 2017. 6. 13. 일부 개정한 ○○군 계획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2017. 6. 13. 조례 제2268호로 이 사건 조례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제3항을 신설하였는데, 동 조항은 태양광 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국도, 지방도, 군도에서 직선거리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제1호)을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으로 정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과규정은 피청구인이 2016. 12. 29. 조례 제2244호로 개정한 ○○군계획조례의 부칙규정이고, 이 사건 조례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만 규정할 뿐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한다.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거기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2017. 5. 30.)후 그 처분 전에 이 사건 조례 제18조제3항이 신설된 경우(2017. 6. 13.시행), 이 사건 처분 당시(2017. 8. 21.)에 시행되는 개정 조례에 정한 기준에 의하여 그 당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한편, 그러한 개정 법령의 적용과 관련한 위 원칙은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 법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적용이 제한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나(대법원 2000. 3. 10. 선고 97누99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조례 시행 전에 이 사건 신청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의 신뢰이익이 공익상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선거/부정청탁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부정청탁이란 무엇인가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열거하고 있는 부패 빈발분야의 14가지 대상 직무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거나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가 부정청탁에 해당합니다.

◆ 부정청탁의 대상 직무

- ☞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됩니다.
-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등 법령(조례·규칙을 포함. 이하 같음)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해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의결·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선발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 입찰·경매·개발·시험·특허·군사·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하거나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
-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 징병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또는 판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
-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 위의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나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이 처음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부정청탁에 대한 거절

- ☞ 공직자 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 부정청탁에 대한 신고

- ☞ 공직자 등은 위에 따른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 공직자 등은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부정청탁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특정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한 경우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나요?



국회의원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한 경우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됩니다. 공익적 목적이란 국가, 사회 일반 다수인의 이익 또는 특정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하므로 특정 제3자의 고충민원이 다수의 이익과 관련되거나 관련될 수 있는 경우에 공익적 목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부정청탁의 예외 사유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청원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기준(공공기관의 규정·사규·기준을 포함)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를 제안·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 공개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
 -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
 -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Q

미성년자(19세 미만인 자)는 선거법에 의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명시되어 있는데요. 만약, 아버지가 출마한 자녀가 “우리 아버지 뽑아주세요” 하면 선거운동 위반인가요?

A

「공직선거법」 제15조는 각종 공직선거에서 선거권이 있는 사람을 열거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만 19세 미만은 선거권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편, 동법 제60조제1항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에 “선거권이 없는 자”를 포함하고 있어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과 같이 비록 본인의 아버지가 선거에 출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로부터 식사대접을 받은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사람으로부터 기부를 받은 사람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에게는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의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의 상한은 3천만원입니다(「공직선거법」 제261조제9항,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3조제5항 및 별표 3의2).

※ 다만,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제공받은 것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261조제9항 단서).





일반유권자(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Q & A



Q1.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의 트위터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호소하는 글을 게시하여 팔로어에게 전송하거나 이러한 글을 돌려보기(Retweet) 할 수 있나요?

A1. 가능합니다. 선거일을 제외하고 시기에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Q2.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예비)후보자에게 유리한 신문기사 내용을 스크랩하여 트위터나 카카오톡으로 전송할 수 있나요?

A2. 가능합니다. 선거일을 제외하고 시기에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Q3.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트위터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선거운동에 대한 내용을 전송할 때 '선거운동정보'를 표시해야 하나요?

A3.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비후보자나 후보자가 자동 동보통신으로 전송하거나 전자우편전송업체에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정보'를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Q4.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요?

A4. 가능합니다. 선거일을 제외하고 시기에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Q5.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특정단체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입후보 예정자의 성명·사진·학력·경력 등의 내용을 게재할 수 있나요?

A5. 가능합니다. 선거일을 제외하고 시기에 상관없이 가능하지만, 허위 사실이나 후보자 비방에 이르는 내용은 게재할 수 없습니다.

Q6.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정보 전송 시 시간제한이 있나요?

A6. 시간제한이 없습니다.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은 시간제한 없이 전송할 수 있습니다.



- Q7.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컴퓨터에서 자동 동보통신으로 문자 메시지를 대량 발송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A7. 불가능합니다.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으로 선거운동 관련 문자를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밖에 없습니다.
- Q8.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SMS(Short Message Service)만 가능한가요? 아니면 MMS(Multimedia Message Service)도 가능한가요?
- A8. MMS가 문자로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문자메시지 전송 시 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의 전송은 제한됩니다.
- Q9.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일에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하여 '투표인증샷'을 올리면서 '○○○후보를 찍어주세요'라는 글을 게시할 수 있나요?
- A9. 불가능합니다. 다만,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단순한 투표 인증샷 게시는 가능합니다.
- Q10. 정치인 '팬카페'나 '동창회'가 그 명의 또는 대표자 명의로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특정 입후보 예정자를 지지호소하는 글을 게시할 수 있나요?
- A10. 불가능합니다. '팬카페'나 '동창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이므로 선거운동정보를 게시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방 소도시의 구청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평소에 제가 지지하던 국회의원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려고 하는데, 혹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만약,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다면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나요?



정치적 행위가 인정되는 공무원이 아니라면 공무원은 특정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기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 금지

- ☞ 정치적 행위가 인정되는 다음의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및 정치단체 또는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등의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대통령(비서실장 및 비서관과 전직대통령의 비서관)
 - 국무총리(비서실장 및 비서관)
 - 국무위원(비서실장 및 비서관)
 - 국회의원
 - 처의 장(비서실장 및 비서관)
 - 각 원·부·처의 차관(비서실장 및 비서관)
 - 국회의장·국회부의장 및 국회의원의 비서실장·보좌관·비서관 및 비서와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
 - 지방의회의원
 -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 공무원의 정치자금 기부

- ☞ 후원회에 기부하는 후원금은 특정 정당, 특정 정치인 또는 특정 정치인 후보자를 지지하기 위한 금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치적 행위가 인정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습니다.
- ☞ 반면,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탁하는 기탁금은 특정정당 또는 특정 정치인 등을 지지하는 정치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무원은 아무런 제한없이 기탁금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법무
단신

예약대행 맡긴 패키지 여행 중 부상 당했다면

관광객이 예약대행 서비스업체를 통해 계약한 패키지 해외여행 중 부상을 당했다더라도 예약대행업체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김병룡 부장판사는 이모씨가 여행예약대행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509338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씨는 2016년 8월 항공과 호텔 등 여행상품 예약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A사를 통해 ‘파타야 산호섬 어드벤처 투어’를 예약·결제하고 태국으로 여행을 떠났다. 태국에 도착해 여행을 즐기던 이씨는 패러세일링 장소에서 씨위킹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쾌속선을 탔다.

이씨는 배가 출발한 지 5분 정도 지났을 무렵 배가 거센 파도로 요동을 치자 이를 이기지 못하고 손잡이를 놓쳐 중심을 잃고 허공으로 떠올랐다 그대로 의자에 떨어졌다.

이 사고로 요추 골절상 등을 입은 이씨는 지난해 5월 A사를 상대로 “1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A사는 “우리는 태국법인의 여행상품을 대행해 판매하고 그 수수료를 취득하는 중개대리상에 불과하다”며 “사고에 대한 책임은 현지여행사인 태국법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맞섰다.

상법 제48조는 상행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 하여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해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알지 못한 때에는 대리인에 대하여도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김 부장판사는 “A사는 계약대리상으로서 태국법인을 대리해 이씨와 여행상품계약을 체결한 자”라며 “대리의 법리에 의해 여행상품계약상 의무와 책임은 태국법인이 부담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가 받은 영수증에도 예약상품 내역에 태국법인투어로 기재돼 있었고 여행상품의 예약화면에도 태국법인의 홈페이지가 표시돼 링크됐다”며 “이씨도 태국법인이 여행상품계약의 당사자임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7월부터 '세로'로 바뀐다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가 7월 6일부터 세로양식으로 바뀐다. 대법원은 이용자들이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문서 형태를 기존 가로양식에서 세로양식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진행된 등기업무 전산화 사업에 따라 가로양식으로 변경됐다. 하지만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른 증명서는 모두 세로양식인데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만 가로양식이어서 보기 불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바뀌는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불필요한 여백을 제거하고 등기사항의 간격을 조정해 기존 가로양식의 증명서에 있는 등기사항이 모두 유지된다. 또 세로양식에서는 한 페이지에 더 많은 내용을 출력할 수 있어 20장이상일 경우 추가로 납부하는 수수료도 절감할 수 있다.

대법원은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의 세로화를 먼저 시행한 이후 동산·채권 담보등기, 선박등기, 임목등기 등 기타등기의 등기사항증명서의 세로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동산·채권담보 등기, 8월부터 누구나 열람·발급

오는 8월부터 누구든지 동산·채권담보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발급 신청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대법원은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도 8월 1일부터 동산·채권담보 등기사항 증명서를 열람·발급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현재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등기사항일부증명서는 담보권설정자와 담보권자 등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는 사람만 열람·발급할 수 있도록 신청권자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담보권설정자의 영업비밀 침해와 신용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같은 제약 때문에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특히 부동산이나 법인은 누구나 등기사항 증명서를 열람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데 반해 동산·채권담보 등기사항 증명서만 제한이 가해져 형평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동산·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등을 개정해 8월부터 열람·발급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제도도 활성화하고 거래의 안전도 보호하겠다는 복안이다.

또 앞으로는 동산담보등기의 담보목적물 보관장소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사실도 등기할 수 있게 된다.

현행 동산담보등기제도에서는 동산담보등기를 설정한 후 담보권자와 담보권설정자의 합의로 동산의 보관장소를 변경한 경우, 기존의 동산담보등기를 말소하고 새로운 동산담보등기를 해야했다. 목적물의 동일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보관장소 변경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까지 목적물의 동일성을 문제 삼기는 어려운데다, 동산·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에 따라 앞으로 누구나 동산담보 등기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 되므로 보관장소의 변경등기를 허용한다고 해도 다른 담보권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현저히 낮아져 이같이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당사자의 합의로 보관장소를 변경한 경우 그 사실을 변경등기를 통해 공시하도록 해 동산담보제도 이용을 촉진하고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도록 했다.



‘아동학대치사’ 최대 징역 15년…**‘아동학대’ 양형기준 강화**

아동을 학대해 크게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사람에 대한 형량이 종전보다 높아진다. 아동이 학대로 숨진 경우 최대 징역 15년, 다친 정도가 심하면 최대 징역 12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진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최근 86차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학대 범죄 등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양형위는 다음달 11일까지 관계기관과 자문위원회 의견을 수렴한 뒤 수정안을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

양형위는 수정안에서 학대를 받은 아동이 숨졌을 때 적용하는 아동학대치사죄에 대해 형량을 가중할 수 있는 상한을 현행 9년에서 10년으로 올렸다. 형량의 50%를 더 늘리는 특별조정까지 하면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는 셈이다.

아동이 크게 다친 경우에 해당하는 아동학대중상해죄도 상한을 현행 7년에서 8년으로 변경했다. 특별조정을 할 경우 최대 징역 12년이 가능하다.

법원은 피고인 형량을 정할 때 ‘감경’, ‘기본’, ‘가중’ 등 3가지 종류의 특별양형요소를 따진다. 죄질이 좋지 않은 가중 요소가 선처를 고려할 만한 감경 요소보다 2개 이상 많으면 형량 상한을 50% 더 늘릴 수 있는 특별조정을 할 수 있다.

양형위는 또 6세 미만 미취학 아동을 상대로 아동학대치사나 중상해를 저지른 경우를 ‘일반가중요소’로 삼아 현행보다 더 엄벌하기로 했다. 일반가중요소는 법원이 구체적 형량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다. 감경과 기본, 가중 등 특별 양형요소로 피고인에게 내릴 형량의 범위를 잡고 일반가중요소로 형량을 정한다.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요건도 엄격해진다. 아동학대 범죄자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형을 선고하도록 했다. 피해자가 6세 미만 미취학 아동인 경우와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를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 사유로 삼을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사안에서 구체적으로 타당한 양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양형위는 이외에도 공갈범죄와 체포·감금죄, 강요죄 등에 대해서도 형법 개정에 따른 법정형 변화를 반영한 양형기준 수정안을 마련해 의결했다.



출생신고, 서울성모병원 등 전국 18개 병원서 온라인으로

5월 8일부터 서울성모병원 등 전국 18개 병원에서 출산할 경우 주민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도 신생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는 8일부터 온라인 출생신고에 참여하는 18개 병원에서 태어난 아이 부모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을 통해서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 분	참여병원	지 역
서울	강남차병원	강남구
	미즈메디병원	강서구
	서울성모병원	서초구
	인정병원	은평구
경기	분당제일여성병원(2018. 7월부터 참여)	성남시 분당구
	분당차병원	성남시 분당구
	봄빛병원	안양시 동안구
	서울여성병원	부천시 상동
	서울여성병원	인천시 남구
	샘여성병원	안양시 만안구
	의정부 성모병원	의정부시 금오동
충청	미즈여성병원	대전 서구
경상	신세계여성병원	대구 북구
	일신기독병원(2018. 7월부터 참여)	부산 동구
	파티마여성병원	대구 수성구
전라	미즈베베산부인과병원	익산시 영등동
	에덴병원	광주 북구
	현대여성아동병원	순천시 조례동

그동안은 출생신고를 하려면 부모가 출생증명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직접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출생신고서를 작성해야 했다.

온라인 출생신고는 산모가 분만 후 출생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병원이 이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경유해 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후 부모가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본인 확인 후 출생 신고서를 작성하고 출생증명서를 스캔본이나 촬영본으로 제출하면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이 병원에서 보낸 정보와 대조한 뒤 출생신고를 처리하게 된다.

행안부는 이날 서울성모병원에서 산모 2명이 직접 인터넷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시연 행사를 가졌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지금은 18개 병원의 참여로만 시작하지만 보다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온라인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다른 병원들도 많이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창보(59·사법연수원 14기) 법원행정처 차장은 “대법원은 출생신고뿐만 아니라 각종 가족관계등록신고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를 확대해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해외건설현장 근로자 고용보험료, 국내와 동일하게 원청업체가 부담해야

국내 하도급업체가 해외건설공사를 국내 원청업체로부터 재도급 받은 경우에도 하도급업체에 고용된 근로자의 고용보험료는 국내와 마찬가지로 원청업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건설업 하도급업체인 A사가 “고용보험료 부과·징수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행정심판 사건에서 최근 A사의 손을 들어줬다.

A사는 원청업체인 B사로부터 해외 건설공사 일부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시행했는데, 공단은 “A사가 해외건설현장 근로자들의 고용보험료를 누락했다”며 A사에 누락된 고용보험료를 부과·징수처분을 내렸다.

이에 A사는 “건설업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의 고용보험료는 원청업체에 납부책임이 있고, 이는 해외 사업장 또한 마찬가지”라며 지난해 6월 행정심판을 냈다.

현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건설업의 경우 원청업체에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중앙행심위는 “고용보험료를 원청업체에 부담시키는 규정은 하도급업체에 고용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사현장이 해외라는 것 외에 계약 당사자인 A·B사가 모두 국내업체로서 국내에서 이뤄지는 하도급 건설공사와 다를 바가 없다면, 국내 건설공사와 동일하게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건설현장 도급공사와 관련해 하도급업체에게 보험료를 징수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청업체인 B사가 보험료의 납부책임을 하도급업체인 A사에게 이전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단이 해외건설현장 근로자의 고용보험료에 대해 공사현장이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A사에 고용보험료를 부과·징수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혼 판결 확정 전 당사자 사망 땐

이혼 판결이 확정되기 전 당사자가 사망해 유족이 낸 이혼신고를 구청장이 수리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이은애 수석부장판사)는 A씨가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2017브58)에서 최근 항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서울가정법원은 2016년 12월 14일 A씨의 아들인 B씨 부부의 이혼소송에서 이혼 판결을 선고했다. 이듬해 1월 13일 이혼 판결문을 송부받은 B씨는 항소기간(14일) 도과 전인 같은달 20일 사망했다. 이에 어머니 A씨는 같은해 4월 서초구에 이 판결을 기초로 사망한 아들 B씨와 며느리 C씨의 이혼 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서초구는 B씨가 사망해 가족관계등록부가 이미 폐쇄됐다고 수리하지 않았다.

그러자 A씨는 “이혼 판결은 항소되지 않은 채 그대로 확정됐고 별도의 소송종료 선언도 없었다”며 “변론종결일인 2016년 11월 30일로 소급해 혼인관계가 해소된 것으로 봐야 하므로 서초구는 이혼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권”이라며 “따라서 이혼소송 계속중 부부의 일방이 사망하면 그 이혼소송은 청구인이 사망함과 동시에 당연히 종료된다”고 밝혔다. 또 “재판상 이혼청구를 인용한 확정 판결은 혼인을 그 판결 확정시로부터 장래를 향해 종료·해소시키는 효력이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는 이혼 판결의 항소기간 만료 전에 사망했는데, 이로 인해 B씨와 C씨 사이의 이혼소송은 당연히 종료되고 이혼판결 또한 확정됐다고 볼 수 없다”며 “서초구청장이 B씨의 사망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적법하게 폐쇄됐다는 이유로 A씨의 이혼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도 A씨의 신청은 이유가 없다며 각하 결정을 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네이버 계정 수백개 구입해 '게시글 추천수 조작'... 30대男 '징역형'

수백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구매해 인터넷 게시글의 추천 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최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2017고단9501).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다니던 회사 사무실에서 '스카이프 메신저'를 통해 불법 인터넷 ID 매매 브로커로부터 네이버 계정과 패스워드, 이름과 연락처 등 640명의 개인정보 파일을 건당 400원에 구매한 뒤 이 계정들을 이용해 '네이버 지식인' 보험 관련 글에 집중적으로 추천을 달아 추천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판사는 "A씨는 불특정 다수인 640명의 이름과 아이디, 패스워드 등을 돈을 주고 구매한 후 이러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인터넷 사이트에 홍보글을 작성하거나 추천했다"며 "취득한 개인정보의 양 및 내용, 범행 동기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중이기 때문에 금고형 이상을 받을 경우 공무원이 될 수 없다며 선처를 바라지만, 2014년 개인정보 290건을 영리 목적으로 제공받아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고, 2016년에도 인터넷 검색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징역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배달대행업체 배달원 '전속성' 함부로 부정하면 안돼

특정 배달대행업체 배달원들이 다른 업체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추상적 가능성만으로 '전속성'을 부정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보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은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업무를 하는 배달원이나 택배원을 특수형태근로자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같은 배달원이 사고를 당한 경우 가장 많은 업무를 수행한 업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다.

김모씨가 운영하는 배달대행업체의 배달원 추모씨는 2015년 2월 16일 김씨에게 오토바이 1대를 월 24만원에 임차해 김씨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의뢰하는 음식점 배달업무를 수행했다. 추씨는 같은 달 21일 배달을 하다 빗길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추씨의 아버지는 근로복지공단에 추씨가 산업재해로 사망했다며 장의비 등의 지급을 청구했다. 공단은 2016년 6월 추씨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판단해 추씨의 아버지 등 유족에게 6,726여 만원을 지급한 뒤 추씨가 일했던 김씨의 배달대행업체에 절반인 3,360만원을 징수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자 김씨는 “추씨는 산재보험 대상자가 아니다”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추씨를 택배원과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아니라 음식배달원으로 보고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1심과 달리 추씨를 음식배달원이 아니라 택배원으로 판단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라고 봤다. 그러나 “김씨 업체 소속 배달원들은 모두 스스로 사고책임을 지겠다는 약약을 김씨에게 제출한 뒤 부여받은 아이디를 배달대행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배달업무를 수행했다”며 “배달원이 된 이후에는 김씨가 따로 업무내용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한 적이 없는데다 배달원

들은 업무수행과정에서(다른 배달업체 앱을 통해) 다른 사업장의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데에도 아무런 제약이 없었으므로 전속성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김씨에게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김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2017두7471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6호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업무를 하는 사람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명시하고 있다”며 “따라서 소속 배달원들이 다른 배달업체의 스마트폰 앱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배달원의 ‘전속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추씨는 김씨의 사업장 외에 다른 사업장의 배달업무 등을 실제로 수행한 사실도 없다”며 “업무의 성격상 추씨의 선택에 따라 다른 사업장의 배달업무 등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추상적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전속성’을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를 위한 특별규정을 둔 취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해당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원심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전속성을 판단하면서 제시한 기준은 결국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보호하려는 법의 취지를 몰각시키게 된다”고 판시했다.

외딴 산간지역 '상수도 설치'... 법원 "주민이 비용 부담해야"

수도가 들어오지 않은 외딴 산간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 상수도관을 설치해 달라고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했다면 공사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 법원은 주민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제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박모씨가 제주특별자치도 지사를 상대로 낸 급수의무이행소송(2017구합16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민에게 질 좋은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국가나 지자체의 책무일뿐만 아니라 수도법 제70조도 기간시설에 해당하는 수도 시설의 설치비용을 원칙적으로 수도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도시설을 설치·관리할 수 있는 재원은 한정돼 있다”며 “국가나 지자체에게 무한정의 의무를 부담하게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른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박씨의 주택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시공비용 7,800만원이 요구된다”며 “이 곳은 서귀포시 중산간지역으로 불과 10여채의 농가만이 다소 떨어진 형태로 취락을 형성하고 있어 수도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 대비 편익이 그리 크지 않아 이런 경우 개별 요청자인 박씨가 시공비용 등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제주 서귀포시의 한 산간지역에 살고 있는데 이곳은 계획급수구역에서 벗어난 외진 곳이었다. 빗물과 농업용수로 생활하던 박씨는 2015년 7월 제주도청에 자신의 주택 일대에 상수도 시설을 설치해 달라며 사업

승인을 청구했다. 제주도는 박씨가 급수시설 공사비 9,200만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상수도 설비공사를 승인했다. 이에 박씨는 “급수시설 공사비용은 지자체의 재정의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자 제주도는 공사비 일부를 감액해 박씨가 7,800만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다시 해줬다. 박씨는 이에 반발해 2017년 3월 “지자체 비용으로 상수도를 놔달라”며 소송을 냈다.



법제처, 법령 속 일본식용어 일괄 개정

‘계기(揭記)’나 ‘행선지(行先地)’, ‘계리(計理)’ 등 현행 법령에서 쓰이고 있는 일본식 한자어가 ‘규정’, ‘목적지’, ‘회계처리’ 등 쉬운 우리말로 바뀐다.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지난 2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어색하거나 일상 생활에서 잘 쓰이지 않는 어려운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개선하기 위한 대통령령 개정안 19건이 일괄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대상 용어는 법제처가 지난 2014년 발굴한 37개 일본식 용어 중 아직까지 정비되지 않은 △갑상선 △지득 △행선지 △계기 △불입 △계리 △하구연 △가료 △부락 등 9개다.

일본식 용어	정비안	대상 법령
갑상선	갑상샘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지득한	알게 된	공증인법 시행령,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행선지	목적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계기	규정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불입	납입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등
계리	회계처리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보험업법 시행령 등
하구연	하굿둑	자연공원법 시행령 등
가료	치료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부락	마을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등

우선 법제처는 ‘기록해 내어 붙이거나 걸어 두고 여러 사람이 보게 하다’는 뜻으로, 현행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과 「사립학교법 시행령」,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등에 쓰이고 있는 ‘계기’를 ‘규정’으로 바꿨다. 또 ‘계산 하여 정리하다’는 뜻의 ‘계리’는 ‘회계처리’로, ‘지득(知得)한’은 ‘알게 된’으로,

‘행선지’는 ‘목적지’로, ‘갑상선’은 ‘갑상샘’으로 순화했다. 아울러 ‘돈을 낸다’는 뜻의 ‘불입(拂入)’은 ‘납입’으로, ‘하구언’은 ‘하굿둑’으로, ‘가료’는 ‘치료’로, ‘부락’은 ‘마을’로 각각 고쳤다.

지난 2006년부터 일본식 용어 정비 등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 온 법제처는 앞으로 법률의 한글화를 비롯해 전문용어나 외국어 등 어려운 용어의 법령화를 사전에 막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사후에 정비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김 처장은 “이번 정비가 국민이 법령을 보다 쉽게 이해하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전문용어나 외국어 등을 적극적으로 찾아 고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5월 14일부터 현행 법령 용어와 문장을 알기 쉽게 개선하기 위해 '국민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기간은 올 8월 14일까지다.

국민이면 누구나 개인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다. 법령 용어와 문장 중 전문용어나 외국어,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복잡한 문장에 대한 개선 의견을 내면 된다.

국민참여입법시스템(<http://community.lawmaking.go.kr>)의 '어려운 법령용어 신고-공모제 게시판'이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공모 제안 게시판을 이용하거나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704호 법제처 법제지원총괄과)으로 접수하면 된다.

법제처는 내부 검토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9월 중 최종 당선작 13편을 선정한 뒤 활용성과 충실성, 독창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시상할 계획이다. 당선작 13편 모두 법제처장 표창과 함께 최우수상 1명에게는 100만원, 우수상 2명에게는 50만원, 장려상 10명에게는 20만원 상당의 부상이 수여된다.

김 처장은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행정과 법치주의의 출발점이자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민 간 소통·통합에 기여하는 밑거름"이라며 "국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듣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 법령을 쉽게 고쳐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4/19 시행법령] 위생용품 안전관리 체계가 강화됩니다!

위생용품 관리법 제정으로, 식당용 물티슈, 주방세제, 일회용 기저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위생용품 안전관리 체계가 강화됩니다.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 2018.4.19.] [법률 제14837호, 2017.4.18., 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용품”이란 보건위생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용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용품을 말한다.

가. 세척제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1) 야채, 과일 등을 씻는 데 사용되는 제제(製劑)
- 2) 식품의 용기나 가공기구, 조리기구 등을 씻는 데 사용되는 제제

나. 행균보조제 : 자동식기세척기의 최종 행균과정에서 식기류에 남아 있는 잔류물 제거, 건조 촉진 등 보조적 역할을 위하여 사용되는 제제

다. 위생물수건 :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물수건

라. 기타 위생용품

- 1) 일회용 컵 · 숟가락 · 젓가락 · 포크 · 나이프 · 빨대
- 2) 화장지, 일회용 행주 · 타월 · 종이냅킨,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물티슈
- 3) 일회용 이쑤시개 · 면봉 · 기저귀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위생용품제조업”이란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생물수건을 제외한 위생용품을 제조·가공·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영업을 말한다.
3. “위생용품수입업”이란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생물수건을 제외한 위생용품을 수입하는 영업을 말한다.
4. “위생물수건처리업”이란 위생물수건을 세척·살균·소독 등의 방법으로 처리(이하 “위생처리”라 한다)하여 포장·대여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영업의 신고) ① 위생용품제조업 또는 위생물수건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위생용품수입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영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수리(受理)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위생용품제조업의 신고를 한 자가 사람에게서 화학물질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등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관리가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을 제조·가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품목의 제품명, 성분 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0조(기준 및 규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생용품의 성분·제조방법·사용용도 등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출할 위생용품의 기준과 규격은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과 규격을 따를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진 위생용품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가공·소분·수입·위생처리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위생용품은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위생처리·저장·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19 시행법령] 제조물 책임법 개정으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제조물 결함에 따른 소비자 피해 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제조물 책임법」이 개정됩니다.

제조물 책임법

[시행 2018.4.19.] [법률 제14764호, 2017.4.18., 일부개정]

개정이유

제조물의 대부분이 고도의 기술을 바탕으로 제조되고, 이에 관한 정보가 제조업자에게 편재되어 있어서 피해자가 제조물의 결함여부 등을 과학적·기술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움.

대법원도 이를 고려하여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그 제품에 결함이 존재하고 그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함으로써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다고 판시한

바 있음. 이에,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반영하여 피해자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등을 증명하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에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경감하려는 것임.

한편, 우리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일반의 상식 등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소액다수의 소비자피해를 발생시키는 악의적 가해행위의 경우 불법행위에 따른 제조업자의 이익은 막대한 반면 개별 소비자의 피해는 소액에 불과하여, 제조업자의 악의적인 불법행위가 계속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이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여 제조업자의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 및 장래 유사한 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피해자에게는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제3조(제조물 책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이 경우 법원은 배상액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성의 정도
2.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정도
3. 해당 제조물의 공급으로 인하여 제조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조업자가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의 정도
5. 해당 제조물의 공급이 지속된 기간 및 공급 규모
6. 제조업자의 재산상태
7. 제조업자가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제3조의2(결함 등의 추정)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그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2. 제1호의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
3. 제1호의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4/25 시행법령] 국민 건강 직결, 의약품 안전 관리를 꼼꼼하게!

의약품 등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대중매체를 통한 전문의약품 또는 원료의약품 등에 대한 광고행위가 금지됩니다.

약사법

[시행 2018.4.25.] [법률 제14926호, 2017.10.24., 일부개정]

개정이유

대중매체를 통한 전문의약품 또는 원료의약품 등에 대한 광고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의약품등의 안전한 사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한편, 정신질환자 등 결격사유가 있는 약사 또는 한약사에 대하여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가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허취소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약사 등에 대한 자격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제68조제6항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은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12호까지의 감염병의 예방용 의약품을 광고하는 경우와 의학·약학에 관한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의약전문매체에 광고하는 경우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문의약품
2. 전문의약품과 제형, 투여 경로 및 단위제형당 주성분의 함량이 같은 일반의약품
3. 원료의약품





첫 투표 기념으로 인증샷 찍은 것 뿐이라구요~!!

올해 첫 선거권을 가지게 된 나어른씨. 생애 첫 선거권 행사를 기념하기 위해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엄지척 포즈’와 ‘손가락 브이 포즈’를 하고 인증샷을 찍은 뒤에 바로 이 사진들을 개인 SNS와 단체 채팅방에 올렸는데요.

그런데 선거 당일에 ‘엄지척 포즈’와 ‘손가락 브이 포즈’의 인증샷을 올리는 게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네요. 투표용지를 찍은 것도 아니고, 특정 정당의 홍보를 한 것도 아닌데 제 셀카를 찍어서 공유하는 것도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1. 하나 : ‘엄지척 포즈’와 ‘손가락 브이 포즈’는 기호 1, 기호 2번을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거 같아. 그러니까 선거 당일에 SNS와 단체 채팅방에 올려서는 안 돼~
2. 두나 : 무슨 소리야. 셀카를 찍으면서 ‘엄지척 포즈’와 ‘손가락 브이 포즈’는 사진을 찍을 때 많은 사람이 취하는 포즈인데... 그런 포즈로 인증샷을 찍어서 올리는 게 선거법 위반이라고? 아무리 선거날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 인증샷을 올리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어~!

☞ 정답은 1번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54조제1항은 “선거일에 투표 마감시각 전까지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날은 선거운동이 종료된 만큼 특정 정당 혹은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추천, 반대하는 내용이 인증샷에 담기는 안 되며, ‘엄지척 포즈’와 ‘손가락 브이 포즈’는 기호 1, 기호 2번 등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연상시키는 포즈이므로 이러한 포즈로 찍은 인증샷은 선거당일에 한하여 SNS와 단체 채팅방에서 공유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SNS나 단체 채팅방에 인증샷을 올린 행위 하나만 가지고 선거일에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별 뜻 없이 그러한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 위반여부가 문제되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으니 선거당일에는 이러한 행위를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기별 공직자 행위기준

1 상시제한

주 체	내 용	근 거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 의무자	•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85①
	•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공무원	• 선거운동(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중처벌)	§60① §85②
	• 당내경선 선거인 참여 및 당내경선운동	§57의2③ §57의6
공무원 등*	• 소속직원·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후보자(퇴고자 하는 자 포함)의 업적 홍보 •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도 조사발표	§86① 1~3호
자치단체장	• 소관사무나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방송·신문·잡지·그 밖의 광고 출연	§86⑦
	•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또는 그와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한 기부행위 (주례 포함)	§113①
누구든지	• 교육적·종교적·직무상 행위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85③
	• 교육적 특수관계를 이용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해 교육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85④
	• 선거운동을 위한 연구소·동우회·향우회·산악회·축구회·정당 외곽단체 등의 사조직 기타 단체 설립	§87②

* 공무원(국회의원, 그 보좌관·비서관·비서·지방의회의원 제외), 선상투표 실시 선박의 선장, 정부보유 지분 50/100이상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공단인 상근 임·직원,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상근 임·직원 및 구·시·군조직 이상의 대표자

② 선거일 전 180일부터 제한 ('17. 12. 15. ~ '18. 6. 13.)

주 체	내 용	근 거
자치단체장 (소속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에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홍보지·소식지·간행물·시설물·녹음물·녹화물 및 신문·방송 포함) 발행·배부·방송	§86⑤
자치단체장	•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 참석 • 근무시간 중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 참석	§86⑥

③ 선거일 전 90일부터 제한 ('18. 3. 15. ~ 6. 13.)

주 체	내 용	근 거
자치단체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 방송출연(선거법규정에 의한 방송, 보도·토론방송 제외)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21①
	• 신문·잡지 등에 칼럼이나 저술 게재	선거기사 심의기준 §11 3호
누구든지	•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	§103⑤

④ 선거일 전 60일부터 제한 ('18. 4. 14. ~ 6. 13.)

주 체	내 용	근 거
자치단체장	• 선거구민에게 정당의 정강·정책, 주의·주장 홍보·선전 •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 참석*, 선거대책기구·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방문 * (예외) 창당·합당·개편대회, 후보자 선출대회, 당원으로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인 방문	§86② 2~3호
	• 통·리·반장회의 참석 (천재·지변·재해, 집단·긴급민원 발생 시 참석가능)	§86②5호
자치단체장 (소속공무원)	•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 개최·후원	§86②4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초도순시·연두순시차 하급기관을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받거나 주민 여론을 청취하면서 참석한 소속공무원·임직원·유관기관장·주민 대표에게 통상의 범위 안에서 식서류(지방자치단체장은 다과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112② 4호 라목

※ §86②제4호에도 불구하고 선거일 전 60일부터 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행위 (법 §86②4호 각목, 규칙 §47②)

- ▶ 법령에 의해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 개최·후원
- ▶ 특정일, 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개최·후원
- ▶ 천재, 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 ▶ 직업지원교육 및 유상(有償) 교양강좌 개최·후원
- ▶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 후원(새로운 강좌 개설, 수강생 증원, 장소를 이전하여 실시하는 강좌 제외)
- ▶ 집단민원 또는 긴급 민원 발생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 ▶ 국가유공자 위령제, 국경일 기념식,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기념행사 개최·후원
- ▶ 법령·조례에 의하여 주민 동의가 필요한 사업의 시행을 위한 사업설명회 개최
- ▶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 단위의 정기적인 종합주민체육대회나 전래적인 고유축제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 ▶ 정부가 주관하는 공공행사에 인력·시설·장비 등 지원

5 선거기간 중 제한 ('18. 5. 31. ~ 6. 13.)

주 체	내 용	근 거
공무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 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않을 사업의 기공식 거행 • 정상적 업무 외의 출장 • 휴가기간에 업무와 관련된 기관·시설 방문 	§86① 5~7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미화원·구두미화원·가두신문판매원·우편집배원 등에게 위문품 제공 	§112② 4호 바목
국민운동단체 주민자치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 등 일체의 모임 개최 	§103②
누구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연설·대담·토론회를 제외한 기타 연설회(개인정견발표, 시국강연회, 좌담회 등) 개최 	§1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모임의 개최 • 반상회 개최(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능) 	§103③④

* 공무원(국회의원, 그 보좌관·비서관·비서·지방의회의원 제외), 선상투표 실시 선박의 선장, 정부보유 지분 50/100이상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공단인 상근 임·직원,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상근 임·직원 및 구·시·군조직 이상의 대표자

지방선거 주요 일정

시행일정	실시사항	기준일
'18.1.15.(월)까지	인구수 등의 통보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 후 15일까지
2. 13.(화)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선거일 전 120일부터
3. 2.(금)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구청장·시장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3. 15.(목)까지	각급선거위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 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일 전 90일까지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선거일 전 90일까지[비례대표지방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 5.14(월)까지]
3. 15.(목)부터 6. 13.(수)까지	의정활동 보고 금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4. 1.(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군의원 및 군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4. 14.(토)부터 6. 13.(수)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5. 22.(화)부터 5. 26.(토)까지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일 전 22일부터 5일 이내
	거소투표신고 및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작성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5. 24.(목)부터 5. 25.(금)까지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
5. 30.(수)까지	선거벽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5. 31.(목)	선거기간개시일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
6. 1.(금)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 전 12일에
6. 1.(금)까지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선거벽보 첩부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6. 3.(일)까지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선거일 전 10일까지
	거소투표용지 발송(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6. 8.(금)부터 6. 9.(토)까지	사전투표소 투표 (매일 오전 6시~오후 6시까지)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6. 13.(수)	투표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선거일
	개표 (투표종료 후 즉시)	